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구 보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466호 2019. 9. 23(월)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96호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97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98호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99호 인천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00호 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01호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 ---------- 1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02호 인천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 1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03호 인천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20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04호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05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2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06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관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07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46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홍보미디어과 [032-560-4146]**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08호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09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1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7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 55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7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57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78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 6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07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29호 인천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공고 ---------- 7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30호 인천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공고 ---------- 8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33호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공고 ---------- 11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41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 12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43호 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 136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홍보미디어과 [032-560-4146]**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9월 2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96호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평생학습계좌제,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결과인정 등의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9월 2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97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으로 한다.

제1조 중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를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운영”로 한다.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구립 지역아동센터(이하 "구립 센터"라 한다)”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7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8조제3항제2호 중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를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 중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로 한다.

제9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구립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재위탁)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23조로 한다.

제4장(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구립 지역아동센터

제14조(설치)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이하 “구립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구립 센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직접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

자"라 한다)를 공모하여 선정하고, 선정한 수탁자와 위·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③ 구청장이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위탁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인력 및 재정능력

2 공신력 및 사업 수행능력

3.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실적

④ 구립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서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6조(구립 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구립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자는 아동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3.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탁자산을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설물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아동복지법」을 준수해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협약 및 구청장의

지도·감독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7.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계속할 의사가 없을 때에는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제18조(협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장비・비품 및 집기 등을 구에 귀속해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가 수탁재산 또는 시설물 등을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장(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센터운영에 있어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는 경우

5.「아동복지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1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재정 및 종사자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해야 한다.

제22조(준용) 센터의 지원과 구립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9월 2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98호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전수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전수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전수관의 예산, 결산, 인사 관련 사항, 그 밖의 전수관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 사안을 심의 결정한다. 다만, 세부운영안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9월 2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99호

인천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서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구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범위)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재정지원 등)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제8조(포상)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우수 의용소방대 및 대원에 대하여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9월 2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00호

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란의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신규허가 시 판매업소 상호 간 안전거리는 부지경계 기준으로 직선거리 1,000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9월 2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01호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별표2 제1호 및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토지 분할, 동식물 관련 시설 및 농수산물 관련 시설의 조경과 축사, 사육장, 작물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시설의 종류와 규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5호 나)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동식물 관련 시설 및 규모는 영 별표1 제5호 가목에 따른다.

제4조(입지기준) 영 별표 1 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입지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해당 토지는 본인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동일한 구 지역이어야 하며 본인 소유의 토지여야 한다.
2. 우량농지(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 또는 지목 상 임야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지목 상 임야인 경우에도 항공사진 등의 자료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토지이용상태가 농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하다.
3. 새로운 진입로의 설치 및 기존 도로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구조 등) 영 별표 1 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하는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구조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표준설계도서로 설치하는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처마 높이는 4미터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는 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설비 등의 설치로 인해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콘크리트 구조(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 구조를 포함한다.)가 아니어야 한다.
3.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제6조(추가적인 건축 기준) 구청장은 영 별표 1 제5호 라)에 따라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을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1개 시설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영농계획과 추가적인 건축계획이 부합하여야 한다.
2. 허가받은 용도대로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제7조(토지 분할의 허가기준) 영 별표 2 제1호 차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도록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대지의 조경) 영 별표1 제5호 가목에 따른 동식물 관련 시설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조경을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같다)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 중에 있거나 허가를 신청 중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9월 2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02호

인천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우리 구 교육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라 함은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뇌로 가는 혈액이 4~6분 정도 산소를 공

급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뇌 손상과,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라 함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장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이다.

3. “응급처치”라 함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 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서구 소속 공무원, 통장 등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습의 기대효과가 높은 서구 초, 중, 고등학생들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후관리) 구청장은 당해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7조(심폐소생술교육 홍보활동) 구청장은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물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9월 2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03호

인천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응급의료 홍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 대상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 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나.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5조(설치 및 권장)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응급의료 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3. 공무원, 보육교사 등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9조(홍보활동)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9월 2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04호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중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0번길 14 (마전동)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제2조 중 별표의 관할구역과 같다

〔별표〕

구청 및 동 청사 소재지(제2조 관련)

구 분	소 재 지
서 구 청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검암경서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480(검암동)
연 희 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간촌로 12(연희동)
청라 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58(연희동)
청라 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269(경서동)
청라 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로8번길 5(경서동)
가정 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464번길 11(가정동)
가정 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 267번길 10(가정동)
가정 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79번길 12-16(가정동)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335번길 3(신현동)
석남 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294번길 17(석남동)
석남 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거북로 116(석남동)
석남 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07(석남동)
가좌 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112번길 10(가좌동)
가좌 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309번길 4(가좌동)
가좌 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57번길 4(가좌동)
가좌 4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80번길 14(가좌동)
검 단 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29번길 14(마전동)
불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14(불로동)
원 당 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24(원당동)
당 하 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67번길 19(당하동)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49(오류동)
마 전 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0번길 14(마전동)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9월 2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05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행정운영동의 원당동란, 당하동란, 마전동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표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서구	계	22		
	당하동 원당동	1	원당동	당하동 1, 2-1~8, 3, 3-1~9, 4, 4-1~3, 5, 5-1~5, 6, 6-1, 7-1~2, 8, 8-1~3, 9, 10-1~2, 11, 11-1~3, 12-1~6, 13-1~6, 14, 14-1, 15-1~2, 15-5~6, 16, 16-1, 17, 17-1~3, 17-5~10, 18, 19-1~9, 20, 20-1~2, 21, 22-1~9, 22-11, 22-13~15, 22-18~27, 23-1, 23-3, 24, 26, 26-1~4, 27, 28-1~4, 30~31, 32-1~3, 33-1~3, 35, 36, 36-1~4, 37-1, 40-1~3, 41-1~3, 42, 43-1, 43-3, 43-5, 44-1~2, 45-1~5, 46~50, 51, 51-1~3, 52, 53, 53-1~3, 54, 55, 55-1, 56, 56-1, 57, 57-3~13, 59, 60, 60-1, 61, 61-1~6, 61-8~11, 62, 62-1, 62-3~12, 63, 63-1, 63-3, 64, 64-1~3, 65~67, 68-1~4, 69-1~4, 70, 70-1~3, 70-5, 70-7, 71-1~2, 71-5~11, 72~73, 74, 74-1, 76-1~5, 77, 78-1~2, 79-1~13, 80, 80-1, 81-1~3, 82-1~3, 83-1, 84-1~5, 85-1~2, 86, 87-1~8, 88, 89-1~5, 89-7~10, 90-1~5, 91-1~3, 92-1~5, 93-1~5, 94-1~3, 95, 95-1~5, 96, 96-1~5, 96-7, 97~98, 99, 99-1~5, 100~101, 102, 102-1, 102-3~4,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103~109, 111, 112-1~5, 113, 113-1,114, 115, 115-1, 116-1~3, 117-1, 117-3~6, 118, 118-1~7, 119~120, 122, 122-1~7, 123, 123-1~5, 135, 145, 145-1~3, 146, 146-1~2, 147, 147-1~3, 148, 148-1~2, 150, 150-1~5, 151, 151-1~2, 152, 152-1~2, 153, 153-1, 158, 158-1~2, 159, 159-1~2, 160, 160-1~2, 161, 161-1~2, 162, 162-1~6, 163, 163-1~3, 164, 164-1~5, 165, 165-1~3, 166-1, 167-1, 168-2~3, 170-1, 170-3~6, 171, 171-1~7, 171-9~12, 171-14, 172, 173-1~3, 174-1~2, 174-5~6, 175-1~10, 176-1~3, 178-4, 184, 184-1, 185, 185-1~5, 186, 186-1~6, 187, 187-1~2, 188, 188-1~22, 189, 189-1~2, 190, 190-1~2, 191, 191-1, 194-1, 195-2~3, 196-1, 197, 197-1~3, 198, 198-1~2, 199, 199-1~2, 200, 200-1, 201, 201-1, 202, 202-1, 203, 203-1~2, 204, 204-1, 205, 205-1, 206, 206-1~4, 208-4,209-1, 211-1~2, 212, 212-1~3, 213, 213-1-4, 214-1~4, 215-1~3, 215-5~7, 216-1~3, 218, 218-1, 219, 220-1~3, 222, 221-1~7, 223, 223-1, 223-3~11, 225, 226, 227, 228-1, 228-3, 229, 229-1,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230-1, 230-3~5, 231-1, 231-3, 233-1~3, 234, 235-1~3, 236, 237, 237-1~9 238~240, 241, 241-1, 242~247, 248-1, 248-3, 249-1, 249-3, 250-1~3, 251, 251-1~4, 252-1~3, 253, 253-1~2, 255-2, 256~257, 258-1~2, 259-1~11, 259-13, 259-15~19, 261-1~2, 261-4, 262-1~3, 263-1~2, 263-4, 264-1~4, 265-1~3, 265-5, 265-7~10, 266, 267-1, 268~269, 270, 270-1, 271, 271-1, 272~275, 276, 276-1~4, 277, 277-1~3, 279, 279-1~7, 280, 280-1~3, 280-5~6, 280-8~11, 281, 281-1~5, 281-7~15, 282, 282-1~2, 284, 284-1, 285, 285-1~3, 285-5~7, 287, 291, 291-1~5, 293, 293-1~6, 296-6, 297-1, 297-3~4, 298~299, 300-1~2, 301~303, 304-1~2, 305, 307-1, 308-1, 309, 309-1~3, 310, 310-1~3, 310-5, 311, 313, 313-1~5, 314, 314-1~2, 314-4~15, 315, 315-1, 315-4~11, 319, 319-1~9, 320, 320-1~6, 321, 321-1, 322-1, 322-3~4, 323, 323-1~3, 325, 325-2~3, 328-1, 325, 325-2~3, 328-1, 329, 329-1~6, 330, 332, 332-1~2, 333, 337, 337-1~5, 338, 338-1, 339, 339-1~2, 340, 340-1~5,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341, 341-1~5, 341-7~10, 342, 342-1, 343, 343-1~2, 344, 344-1, 346, 346-1, 347, 348-1~2, 349, 350, 350-1~8, 351, 351-1~5, 352-1~4, 353-3~4, 354, 354-1, 355-4, 356-2, 357-13, 357-23, 357-27, 357-29~30, 357-36, 357-38, 357-41, 359, 360, 360-2, 361-2, 362, 362-1~2, 364, 365-1, 366, 366-1~2, 368~370, 371-1~9, 372, 373-1~2, 374, 376-1, 379-1, 380, 381, 381-2, 382-1, 383-1~3, 388-1, 388-3, 390, 390-1~3, 391, 391-1, 394-1~3, 395-1, 397-2, 97-4, 401, 401-1~15, 402, 402-1~3, 405-1~2, 407-6~7, 408-2, 409-2, 409-5, 410-7, 412, 412-1~2, 413, 413-1~4, 414, 414-1~3, 415, 415-1~6, 416, 416-1~2, 417, 417-1~4, 418, 418-1~3, 419, 419-1~5, 420, 420-1~5, 421-6, 422-1, 424-4~7, 426, 426-1~6, 427, 427-1~4, 428, 428-1~3, 429, 429-1~3, 430, 430-1~4, 431, 431-1~3, 432, 433, 433-1~2, 434-1~2, 435-1~2, 436, 436-1~2, 437, 437-1~2, 438, 439-1~2, 440-1, 441, 442, 442-1~2, 443, 444-1, 445, 445-3~4, 446, 447-1~2, 448-1~10, 449, 449-2~6, 450-1~2,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451-1~2, 451-5, 451-8~11, 452, 453, 454-1~3, 454-6~7, 455-1~3, 455-5~6, 456-1~17, 456-19, 456-23~30, 457-1~7, 458-1~10, 458-13~15, 459-1~4, 459-7~9, 460, 460-2~11, 461-1~3, 462, 462-1, 462-5, 463, 463-1~4, 464-2~5, 465, 465-1, 466-1, 466-3, 467-2, 468-2, 469-1~2, 470-2, 470-5, 471-2~4, 472-1~3, 473-1~4, 473-6, 474-1~4, 474-6, 474-9, 474-12, 475-1~4, 475-6~8, 476-1~2, 476-4~5, 476-7, 477-1~6, 477-8, 477-11, 477-17~18, 478-1~2, 479, 480-1~4, 481-1, 481-3~4, 482-2~5, 483-1, 485-2, 486-1, 486-3~5, 487-1~5, 488~489, 490, 490-1~3, 491, 491-1~7, 492, 493, 494, 494-1, 494-3~4, 495, 495-1, 495-3~4, 496, 496-2~4, 497, 497-1~4, 498, 498-2~3, 499, 500-1~6, 500-8~10, 501~502, 503-1~3, 504~505, 506-1~4, 507-1~3, 508-1~3, 508-5~9, 509, 510-1, 510-3~4, 511-1~2, 511-4, 512-1~2, 512-4, 513-1, 513-4, 514-1, 515, 516, 516-1~2, 518-1, 518-4 519-1~2, 519-4~6, 520-1~2, 521-1, 522-1~3, 523, 523-1~4, 524-1, 524-3~5, 524-7, 525-1~2,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525-5~7, 526-1~18, 527, 528, 528-1~3, 529-1~4, 530-1~2, 531-1~9, 532-1-10, 533~534, 535-1~5, 536-1~2, 537, 537-1~5, 538~539, 540, 540-1~2, 541-1~3, 542, 543-1, 543-3, 543-5, 544, 544-1, 546~547, 548, 548-1 549-1~5, 550~552, 553, 553-1, 554, 554-1~2, 555~557, 558-1~2, 559-1~4, 560-1~5, 561~563, 564, 564-1, 565, 566-1~4, 567-1~3, 568-1~2, 568-4~7, 568-11~13, 569, 569-1~2,570-1~2, 571-1~5, 572, 572-1~3, 573, 574-1~9, 575, 576, 576-1~2, 577, 577-1~3, 578, 578-1, 579-1~2, 580-1~2, 581-1~3, 582-1~17, 583, 584-2, 585-2, 586~589, 590-1~2, 590-4~5, 591-1~2, 592-1, 592-3~4, 592-6, 592-11~13, 592-15, 593-4~5, 594-1~2, 595~598, 599, 599-1, 600~602, 603-1, 603-3~5, 604~606, 607-1~2, 609-2, 609-5~6, 610-1, 610-4~5, 610-7~8, 611-1, 611-3~5, 612-1~8, 613, 613-1~4, 615, 615-1, 616, 616-1, 617~620, 621-1, 622, 623, 624-1~4, 625-1~8, 625-10~15, 626, 626-1~2, 627, 627-1, 628~630, 631-1~3, 632, 633-1~4, 634-2, 635-1, 636-1~2 637~638, 639-1~2,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640-1~2, 641, 641-1, 642~643, 644-2,645, 645-1, 646-1~4, 648, 648-1, 649-1~4, 650, 650-1, 651, 651-2, 652-2, 653-1~5, 654, 654-1~2, 655, 655-1~2, 656-1~3, 658-1~8, 658-18~19, 659-1~5, 660-1~2, 660-4, 660-6~7, 661-1~5, 661-12~18, 661-20~21, 662-1~3, 663, 663-2, 664, 665, 665-1~4, 666, 666-1~2, 667~670, 671-1, 671-4, 671-7~10, 672-1~3, 672-5~7, 673, 674-1~4, 675~678, 679-1~3, 680-1, 681-1~2, 682, 683-1~2, 684, 685-1~3, 686-1~3, 687, 689-1~3, 690, 690-1~3, 691-1~5, 692-2~4, 693, 693-1~6, 695-1~2, 696-1~6, 697-1~3, 698-1, 699, 699-1~10, 700, 701, 701-1~4, 701-6~14, 702, 702-1, 702-3~7, 703-1~7, 704, 704-1~3, 705-1~6, 706-1~3, 707-1~2, 707-5~6, 708, 708-2~3, 709-2, 710, 710-2~5, 711~712, 713, 713-2~4, 714-1~2, 715, 716, 716-1, 717~718, 719-4~5, 720, 721, 721-1~2, 722~723, 724, 724-1~2, 725, 726, 726-1~3, 726-5~8, 726-11~25, 727-2, 727-5~8, 728, 728-1, 728-3~4, 729, 729-2, 729-5, 730, 730-1, 732, 732-1, 733-1~7, 734-1~12,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735-1~13, 736 - 1~2, 737-1~2, 738, 739-1, 740-1~6, 741-1~6, 742-1, 743-1, 743-5~6, 744, 744-1~2, 745-2~3, 746-1, 746-3~8, 747, 747-3, 748-1~3, 748-6, 749-1~8, 749-12~13, 749-15~29, 749-31~34, 750-1~3, 750-5~6, 750-10~17, 751-1, 752, 964-7, 964-9, 964-16~24, 965-1, 965-3~4, 966, 967, 967, 968, 969, 970, 971, 971-1, 972-2~4, 974~980,981, 981-1~3, 982, 983, 983-2~4, 984-1~2, 985-1~2, 986, 987, 987-1, 988, 989, 989-1~12, 990, 990-1~4, 991~996, 997, 997-1, 998, 산2~4, 산6-1~2, 산6-5~6, 산7-1~2, 산8-2, 산11-1, 산12-1~2,산14-1~2, 산15-1~5, 산16, 산17, 산18, 산19, 산20-1~3, 산21-1~3, 산24-1~2, 산25-1~5, 산26-1~3, 산26-5, 산27~28, 산29, 산30-1, 산31, 산32, 산32-1, 산33-1, 산34, 산35-1~4, 산36-1~10, 산36-13, 산38-1~3, 산39-1~3, 산40, 산41-1~2, 산42-1~2, 산43~44, 산45, 산45-1, 산46~50, 산51-1, 산52, 산53-1, 산54, 산54-1, 산55-1, 산55-3~5, 산55-8~10, 산56, 산57-1~4, 산58~59, 산60-1~4, 산61-1~3, 산62, 산64,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산64-1, 산65-2~3, 산68-1, 산69~73, 산74-1~2, 산75, 산75-1, 산76, 산77-1, 산78, 산79-2, 산80-1, 산81, 산83~84, 산85-1, 산87, 산89, 산92-1, 산92-2, 산92-4, 산93, 산93-2~8, 산94, 산94-1, 산95~96, 산98~99, 산100-5~6, 산100-8~12, 산100-14~26, 산101, 산101-1, 산102-1~2, 산103, 산103-2~4, 산 104, 산105-1, 산105-5, 산105-7~9, 산105-13, 산105-16~23, 산105-25~29, 산106, 산106-1, 산107, 산107-1~2, 산108-1~5, 산109, 산109-1, 산110, 산110-1~4, 산111-1, 산111-3, 산112, 산112-1~5, 산113-2~4, 산114, 산114-1~6, 산115, 산115-1~5, 산116-1~5, 산117-1~9, 산 118-1~4, 산118-6~11, 산119, 산119-1, 산120, 산120-2~3, 산122, 산125, 산125-1~9, 산127, 산127-1~2, 산127-6~7, 산129-3, 산132-1, 산135, 산135-1~5, 산136, 산136-1~2, 산138-1~3, 산139-1~4, 산140~산144, 산145, 산145-1, 산147-1~3, 산147-5~10, 산149, 산150, 산151-1, 산151-3, 산154-1~5, 산177, 산177-1 원당동 일원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마전동 당하동	1	당하동	마전동 518-7, 520-5, 521-11, 521-13~14, 521-1~5, 521-7~9, 521-21~22, 521-26, 522-1~5, 523, 524, 524-1~3, 524-5, 524-7~9, 524-10~16, 524-18~20, 525-1~3, 526, 526-1~2, 526-4, 526-6~7, 527, 527-1~4, 528, 529, 529-1~2, 529-4, 529-6~11, 530, 530-1, 531, 531-1~2, 532, 532-1~6, 533, 533-1, 534, 534-1~8, 535-1, 535-3~7, 536-1, 536-3~5, 537, 537-1, 538-1, 539, 540, 540-1~7, 540-9~11, 541~543, 543-1, 544, 544-1~3, 545-1~4, 545-6~13, 545-15~17, 545-27~29, 546-1~2, 546-5~6, 616, 616-1, 616-6, 628, 628-4, 629, 629-1~2, 629-4~5, 629-16~17, 629-19, 629-22~28, 710, 710-2~3, 711~712, 산168-1~15, 산169, 산170-4, 산170-8, 산170-13, 산181-1, 산181-14, 산181-17, 산196-1~2, 산196-5, 산196-7, 산196-15, 산196-17, 산196-19~20, 산196-23, 산196-23, 산196-25~29, 산197-1, 산197-5-10, 산198, 산198-1, 산199-1, 산199-3, 산199-5~10, 산200, 산200-1, 산201-1~2, 산202, 산203-1, 산203-3~5, 산204-1~2, 산204-4 당하동 748-4~5, 748-8~9, 750-7, 750-20, 753~757, 759-1~4, 760, 760-1, 761, 761-1~6, 762-1~4, 763, 763-1, 764, 765-1~41, 766~768, 768-1~2, 769, 769-1~2, 770,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770-1~5, 771, 771-1~2, 772, 772-1~7, 773~774, 774-1~2, 775, 775-2~8, 776, 776-1~2, 777, 777-1~6, 778-1~2, 779, 779-1~9, 780~781, 781-1~2, 781-4~7, 781-9, 782-2, 783, 783-2~3, 786, 786-1, 787, 787-1~2, 788, 788-1, 789, 789-1~4, 789-6, 790~791, 792-1~3, 793~7, 797-1~5, 798, 798-1, 799, 800-3~4, 800-6, 803, 803-1, 805, 805-1, 806~807, 807-1~2, 808-1~2, 809~12, 813-1~2, 814~818, 819-1~2, 819-4~5, 820-1~6, 820-9~12, 821~823, 823-1~3, 824, 827-1~3, 827-5 827-7, 827-9, 828, 828-2~6, 828-8, 828-11, 829-1~2, 829-5~6, 829-9~10, 830, 830-2, 831, 831-1~6, 832-1, 832-4~11, 833-1~3, 834, 834-1~5, 834-8, 834-11~24, 835-1, 835-3~6, 835-9~15, 836-1~3, 836-7~8, 836-11~14, 837, 837-2~4, 838-1~3, 838-5~6, 838-9, 839, 839-6, 840-1, 840-5~6, 840-8, 840-13~17, 841, 841-3, 842-2, 843~844, 844-2~14, 846-1~5, 846-6~8, 847-1~6, 848-1, 848-4, 848-6, 848-8, 849-1~3, 849-6~7, 850-1, 850-4~7, 851, 851-1~3, 851-6, 851-10~12, 851-16~22, 851-29~32, 853-1, 853-5, 854-1, 854-3, 854-5~6, 855, 857-2~3, 858-5, 859, 859-1, 859-4~5, 859-7, 860~863, 863-1, 872-4, 876-1, 876-4~5, 877-2~4, 877-6, 878, 880-5, 880-8, 880-11, 882, 883-5~10, 883-15~18,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883-25, 888-9, 895-1, 910-3~4, 942-20~21, 943, 943-2~3, 943-5, 943-7, 943-14, 943-16~17, 943-25~44, 943-47~54, 943-58~60, 955-4, 955-6, 955-8~12, 955-14~17, 955-20, 955-27, 956-1~28, 957, 957-1~8, 957-10~18, 957-20~23, 957-30~31, 958, 958-1~4, 958-6, 958-8~11, 958-13, 958-17~19, 958-23~26, 958-31~34, 958-39~42, 958-45~46, 958-48, 958-50~58, 958-60~61, 958-64~68, 959, 959-1, 960, 960-1~2, 960-4, 961, 961-1, 962, 962-1~6, 999, 1001, 1001-1, 1002, 1002-1, 1003, 1003-1~5, 1003-9, 1004-1~4, 1005, 1005-1, 1005-4, 1006~1007, 1007-1~2, 1007-5~6, 1019~1020, 1065-1~6, 1066-1~5, 1067-1, 1067-4~5, 1068~1074, 1075-1~9, 1075-21, 1076-1~3, 1077-1~16, 1078-1, 1078-4~8, 1079-1~9, 1080-1, 1080-12~20, 1080-24~28, 1081-1~8, 1082-1~12, 1083-1~16, 1084-1~14, 1085-1~11, 1086-1~10, 1087-1~24, 1088-1~3, 1089-1~11, 1090-1, 1090-6, 1091-1~7, 1092-1~21, 1093-1~6, 1094-1~4, 1095-1~7, 1096-1~4, 1097-1~15, 1098-1~12, 1099-1~4, 1100-1~10, 1101-1~15, 1102-1~5, 1103-1~2, 1104-1~3, 1105-1~4, 1106-1~13, 1107-1~10, 1108-1~12, 1109-1~11,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1110-1~17, 1111-1~8, 1111-10~12, 1112-1~2, 1113-1~6, 1114-1~6, 1115-1~8, 1116~1140, 산101-1, 산102-1, 산102-3~5, 산118-5, 산121-1, 산122-1, 산152-1, 산152-6~8, 산155, 산157, 산160, 산161-1~47, 산161-49~55, 산162-1, 산162-3~39, 산164, 산164-3, 산165, 산170, 산172-1~3, 산172-8~12, 산172-14, 산174-8~9, 산174-13, 산176, 산178-1~4, 산179-1, 산179-3~6, 산181, 산181-2~3, 산 182, 산182-1, 산183-2, 산183-4~5, 산185-1, 산185-4, 산185-6, 산185-8~9, 산186-3, 산189-4, 산189-7, 산192-1, 산192-3, 산192-8, 산192-10, 산193, 산194, 산195-6, 산196-1, 산196-3~5, 산197-1, 산202-6, 산 203-1, 산203-3, 산211-7, 산213-2, 산213-6, 산213-12, 산214-1, 산217-2, 산217-13, 산217-17, 산218-1~2, 산220-산221, 산221-1, 산221-3, 산221-5, 산222-7, 산225, 산226-1~3, 산228, 산228-1~4, 산230, 산234-8, 산234-44 오류동 일원, 왕길동 일원
	오류동 왕길동	1	오류왕길동	
	마전동	1	마전동	마전동 463, 463-2~3, 463-7~16, 464, 464-1~2, 464-4~7, 465, 465-1~6, 466-1~9, 467, 467-1~2, 468, 468-1~3, 469-1~21, 470-1~2, 470-4~6, 470-10~15, 470-17~19,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473, 497-1, 497-3, 499, 499-1, 499-3~4, 499-9, 500~503, 503-2, 504, 505-1~3, 506, 506-1, 507, 508-1~4, 509-1~2, 510~512, 512-1~4, 513, 513-1~4, 514, 514-1~2, 515, 515-1~12, 515-14~32, 515-40, 515-42~44, 515-46~47, 516, 516-1~23, 517, 517-1~8, 517-10, 517-16, 518, 518-1, 518-3~4, 520-1, 520-3, 520-6, 626-22~24, 626-42, 628-3, 629-11, 631, 631-1, 632-1, 632-4~23, 639-39~41, 639-47, 639-81~83, 639-85~87, 646, 646-1, 646-3, 646-9, 705-4, 706, 709, 710-4, 713, 713-1~4, 713-16, 713-19~31, 999-1~25, 1000-1~12, 1001-1~7, 1002-1~18, 1003-1~2, 1004, 1005-1~24, 1006-1~17, 1007-1~11, 1008-1~12, 1009-1~8, 1010-1~5, 1011-1~3, 1012-1~2, 1013~1014, 1015-1~6, 1016-1~10, 1017-1~5, 1018-1~4, 1019, 1020-1~15, 1021-1~7, 1022-1~8, 1023, 1024-1~18, 1025-1~20, 1026-1~7, 1027-1~5, 1028-1~16, 1029-1~2, 1029-5~7, 1030-1~3, 1031-1~6, 1053-1~4, 1054-1~7, 1055-1~3, 1056-1~7, 1057-1~7, 1058-1~5, 1059-1~15, 1060-1~10, 1061-1~9, 1062-1~9, 1063-1~13, 1064-1~5, 1065-1-4, 1066-1~8, 1067~1070, 1075, 1083~1115, 1116-1~2, 1117, 산101-4,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산102-12, 산103-5, 산103-9~10, 산108-1, 산120-17, 산127, 산128, 산128-1~6, 산128-8~13, 산129-2, 산129-4, 산129-11, 산129-14, 산129-17~18, 산129-24~27, 산140-27~28, 산146-8, 산158, 산158-2~4, 산158-9, 산159-1~2, 산159-4, 산159-6~11, 산159-13, 산159-16~18, 산159-20, 산160-13, 산163~산164, 산164-1, 산165-1~4, 산166, 산174-1~2, 산175-1~8, 산175-10~11, 산176-1, 산176-4~5, 산176-10, 산177-1, 산178-1~2, 산178-7, 산179-1~8, 산180-1~8, 산181-6, 산185-7~10, 산186-1, 산186-5~6, 산186-8~10, 산187-1~7, 산188-1, 산188-4, 산194-1~2, 산194-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9월 2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06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을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를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으로 한다.

제3조 중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 할”을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자동판매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3년”을 “5년 이내”로 한다.

제6조 중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자동판매기”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계약된 신문·복권판매대, 매점과 자동판매기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8호 중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별표】

우선 계약 순위(제5조 관련)

순위	장 애 인	노 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	북한이탈주민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70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65세 ~ 69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
3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9월 2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07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부수된”을 “딸린”으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부적합하거”를 “적합하지 않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시하여”를 “분명하게 밝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개・보수”를 “개수・보수”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휴대한”을 “지닌”으로 한다.

제11조제2호 본문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행사 및”을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제12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은”으로,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을 “등록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으로 하고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제12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제1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중복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반환하고”를 “되돌려주고”로, “반환한다”를 “되돌려준다”로 한다.

제21조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9월 2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08호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를 “긴급하거”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생활체육협의회”를 “체육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립하여”를 “세워”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개・보수”를 “개수・보수”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휴대한”을 “지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문란하게 하는”을 “어지럽히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9월 23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09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를 “피해주민”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피해의”를 “피해에 대한”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원기준)”을 “(지원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위한”을 “위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제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하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를 “원인제공자”로 하여 제5조를 제7조로 하고, 제5조와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제1항 중 “생활안전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를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로 하고 “재난피해자로부터”를 “피해주민으로부터”으로 하며, 제2항 중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을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으로 하고, 제3항 중 “재난피해자가”를 “피해주민이”로 하며, 제5항 중 상단 “재난피해자가”를 “피해주민이”로, 중단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각각 한다.

제7조 중 “제6조제6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하고, 제7조를 제9조로 한다.

제8조 중 “제6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등”을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

으로, “말한다)”를 “말한다)의”로 하고, 제8조를 제10조로 한다.

제9조 중 “제6조제6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하고, “생활안정지원등”을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하며,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을 “물품이 제4조 및 제7조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제9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0조, 제11조와 제12조를 각각 제12조, 제13조와 제14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3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17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9.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당하동 검단신도시 AA3블록 공동주택 신축

2. 사업주체 : 미래도이엔씨(주)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A3블록
   나. 대지면적 : 40,736㎡
   다. 사업규모 : 연면적 111,428.5698㎡ (지하 2층, 지상 25층)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7개동 65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마. 사 업 비 : 269,470,000천원
4. 사업기간 : 2019. 10. 1. ~ 2022. 9. 30.

5. 변경사항
   가) 사업기간 변경
   - 기존 : 2019. 8. 30. ~ 2022. 6. 30.
   - 변경 : 2019. 10. 1. ~ 2022. 9. 30.

나) 연면적 변경(공동주택 코어 피트 조정, 지하주차장 우수조 추가 등)
- 기존 연면적 : 111,860.1466㎡
- 변경 연면적 : 111,428.5698㎡

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9-17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9.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 · 변경 · 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봉수대로 329 외 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09.23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9-09-23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858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329 (석남동)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2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416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143 (석남동)	20090922	이 도로의 종점 부근이 옛 건지골을 지나므로 명명(건지는 옛날 이 지역에 있던 마른 연못)	
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12	인천광역시 서구 청동로 89 (청라동)	20101111	청라대로 동쪽에 위치	
4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8-102	인천광역시 서구 청서로 50 (청라동)	20101111	청라대로 서쪽에 위치	
5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6-1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 82 (청라동)	20140804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및 큰시내를 이르는 말	
6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4-48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단지로 120-1 (원창동)	20190121	북항배후단지 증양을 통과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77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32번안길 14 (원창동)	20131202	북항로32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77-17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62번길 24-10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조서

고시일 : 2019-09-23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307번길 26-3 (석남동)	건물 멸실	20090922	가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0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178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B11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9.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B11블록 공동주택 신축

2. 사업주체 : 덕평산업개발(주) (대표자 양민석)
전라남도 담양군 청평면 보평길 49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B11블록
나. 대지면적 : 21.818㎡
다. 사업규모 : 연면적 72,765.3801㎡ (지하2층, 지상29층)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5개동 510세대 및 이에 따르는 부대·복리시설
마. 사 업 비 : 377,360,457천원

4. 사업기간 : 2019. 10. 01. ~ 2022. 05. 30.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 - 1507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2019.4.30.시행, 법률 제16413호 2019.4.30.)에 따른 일몰 경과 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
- 현행 :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 100분의 50
- 개정 후 : 2020년 12월 31일 까지 : 100분의 50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우(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560-4201 / FAX 560-2722]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일몰 경과 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

- 현행 :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 100분의 50
- 개정 후 : 2020년 12월 31일 까지 : 100분의 50

3. 참고사항

가. 개정안 : “별지 참조”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별지 참조”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8조제4항제2호”를 “제38조제4항제1호”로, “다음 각 호와 같이”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감한다. 1. 2016년 12월31일까지: 100분의 75 2. 2017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100분의 50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제38조제4항제1호----------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 <삭 제> <삭 제>

관계 법령 발췌사항

□ 「지방세특례제한법」(2019. 4. 30. 시행)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8.12.24]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4.1.1]

③ 삭제 [2018.12.24]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신설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31, 2018.12.24]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감율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이 통합되어 도청 소재지인 시가 된 경우 종전의 시(도청 소재지인 시는 제외한다)·군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에서 통합되기 전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 「지방세법」(2019. 1. 1. 시행)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1]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본조제목개정 2013.1.1]

□ 「민법」(2018. 2. 1.시행)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의료법」(2020. 2. 28. 시행)

제48조(설립 허가 등) ① 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실·과별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 · 과별 의견			
협의개요	실 · 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2019.9.16.~10.14. .○ 내 용 - 의견수렴			

입 법 예 고			
협의개요	제 출 자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2019.9.23.~10.14. ○ 내 용 - 구보게재 - 인터넷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9 - 1529호

인천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9.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있음)

가. 공업용지(Ⅰ8)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기 정					변 경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Ⅰ8	63,091.6	1	63,091.6		Ⅰ8	63,091.6	1-1	29,862.8	
							1-2	33,228.8	

나. 공업용지(Ⅰ8)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Ⅰ8	1 → 1-1, 1-2	획지분할	효율적인 토지이용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Ⅱ.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1.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의견제출: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도면: 게재 생략, 열람 장소에 비치

4.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3)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 민 제 안 서

2019. 8.

제 안 인 : 주식회사 케이씨씨

인천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 제안서

제안자	성 명 (법 인 명)	주식회사 케이씨씨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344(서초동)			
제안사업의 개요	제안의 범위	인천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업의 명칭	북항배후부지 공업용지 Ⅰ-8가구 획지분할 (원창동 379-1번지)			
	사업의 목적	■ 외부환경 여건변화 및 시장원리에 따른 자연스런 용도변화에 대응하고자 창고시설과 상업기능을 지원하는 판매시설을 분리하여 각각의 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의 부문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반경 및 도시관리계획 실현을 위하여 가구 및 획지분할 계획을 재정비하여 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79-1번지 (북항배후부지 공업용지 Ⅰ-8가구)			
	면 적	2,092,932.8㎡			
	시 행 방 법	Ⅰ-8가구 획지분할(1획지→2획지)			
	토 지 현 황	구 분	공부상면적(㎡)	사용면적(㎡)	비 고
		379-1	63,091.6	63,091.6	
		합 계	63,091.6	63,09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제안합니다.

2019년 8월 일

제 안 인 : 주식회사 케이씨씨 (인)

<첨 부>

1. 주민제안 개요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3. 기초자료조사서
4. 환경성 검토
5. 인천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6. 건축계획
7. 토지이용에 관한 동의자료

Ⅰ 주민제안 개요

1 주민제안 배경 및 목적

Ⅰ. 주민제안 개요

1 주민제안 배경 및 목적

- 외부환경 여건변화 및 시장원리에 따른 자연스런 용도변화에 대응하고자 창고시설과 상업기능을 지원하는 판매시설을 분리하여 각각의 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의 부문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반영 및 도시관리계획 실현을 위하여 가구 및 획지분할 계획을 재정비하여 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 토지편입 현황

구분	위 치	지 번	지목	공 부 상 면적(㎡)	편 입 면적(㎡)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원창동	379-1	대	63,091.6	63,091.6	주식회사 케이씨씨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344(서초동)	
합 계				63,091.6	63,091.6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공업용지(Ⅰ-8)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기 정					변 경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	위 치	획지	필지	가구번호	면적 (㎡)	위 치	획지	필 지	
				면 적(㎡)					면 적(㎡)		
	계			62,946	-	계			63,091.6	-	
Ⅰ	Ⅰ-8	62,946	1	62,946	-	Ⅰ-8	63,091.6	1	29,862.8	-	-
								2	33,228.8	-	

2. 공업용지(Ⅰ-8)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위 치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Ⅰ-8	1 → 1~2	획지분할	토지이용계획의 합리화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획지계획 ▪ Ⅰ-8-1 : 창고시설 ▪ Ⅰ-8-2 : 판매시설

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공업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Ⅰ	Ⅰ-7, 8	용 도	허용	•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도시형 공장에 한함),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판매시설(당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건축한계선	• 대로1-7호선변 : 6m • 도시계획도로변 : 3m(Ⅰ-7-2만 적용) • Ⅰ-8 : 3m, 북측변 20m	

⑥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Ⅴ 인천 도시관리계획(북항 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 형태·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기정]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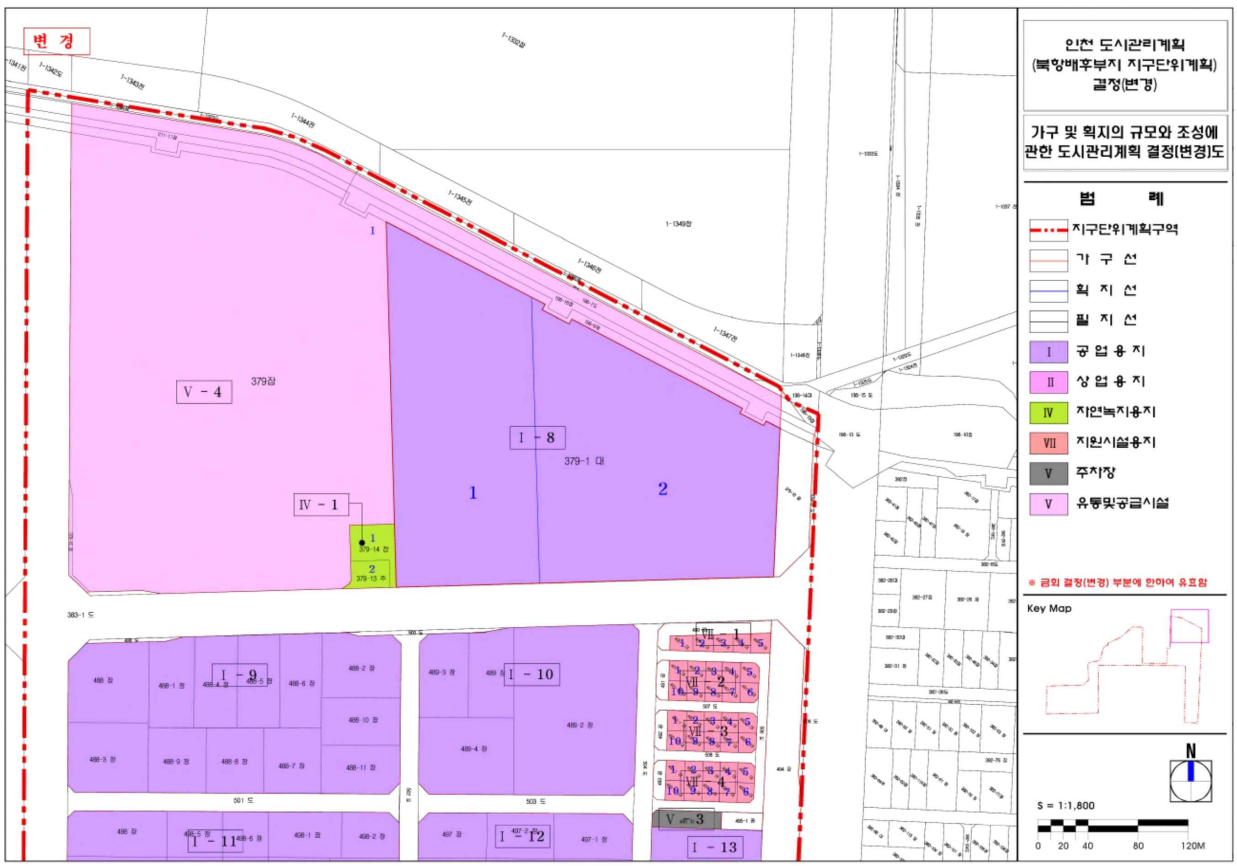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기정]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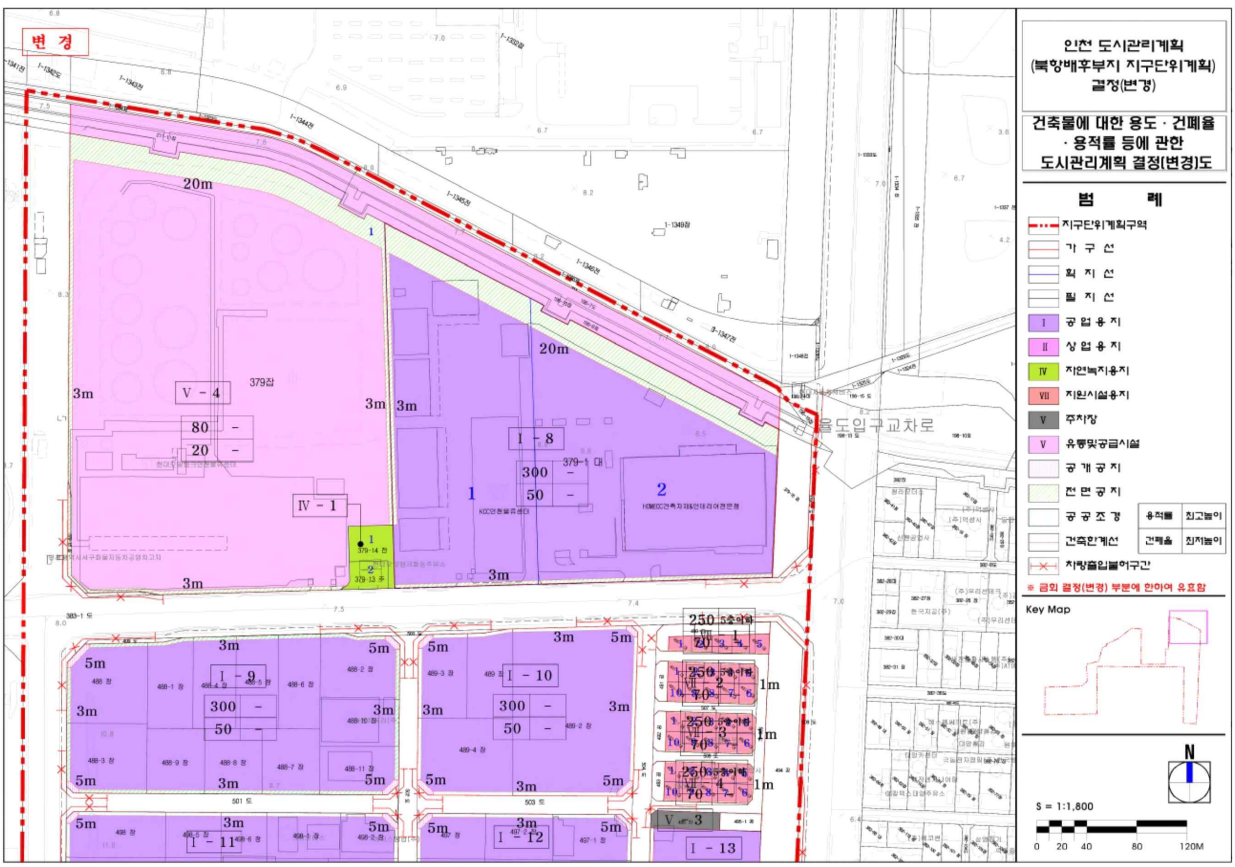

Ⅵ 건 축 계 획

1 Ⅰ-8가구 건축개요(기정)

2 Ⅰ-8가구 획지별 건축개요(변경)

1 Ⅰ-8가구 건축개요(기정)

1. 건축물 계획(총괄)

대지면적	지 번	지 목	대장면적(㎡)	비 고
	379-1	대	63,091.6	
	합 계	63,091.6		
건축면적	20,484.08㎡			
연 면 적	28,871.90㎡			
용적률산정 연면적	27,911.00㎡			
건 폐 율	20,484.08㎡ / 63,091.6㎡ × 100 = 32.47%(법정 50%)			
용 적 률	27,911.00㎡ / 63,091.6㎡ × 100 = 44.24%(법정 300%)			

■ 세부 건축개요

구분	용 도	규 모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비 고
1동	판매시설	지하1층/지상3층	8,712.22	16,522.96	판매시설
7동	판매시설 (공방)	지상1층	59.35	58.35	판매시설
3동	창고시설 (위험물창고)	지상1층	1,231.20	1,231.20	창고시설
4동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지상1층	988.20	988.20	창고시설
5동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지상1층	988.20	988.20	창고시설
6동	창고시설 (펌프실)	지상1층	40.89	40.89	창고시설
8동	창고시설 (집배송시설)	지상1층	535.04	535.04	창고시설
9동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지상1층	2,359.75	2,383.50	창고시설
10동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지상1층	950.31	958.31	창고시설
11동	창고시설	지상2층	4,618.92	5,165.25	창고시설
합 계			20,484.08	28,871.90	

② Ⅰ-8가구 획지별 건축개요(변경)

1. 창고시설(1획지)

대지면적	지 번	지 목	분할예정 면적(㎡)	비 고
	379-1 (1획지)	대	29,862.8	
	합 계	29,862.8		
건축면적	11,712.51㎡			
연 면 적	12,290.59㎡			
용적률산정 연면적	12,290.59㎡			
건 폐 율	11,712.51㎡ / 29,862.8㎡ × 100 = 39.22%(법정 50%)			
용 적 률	12,290.59㎡ / 29,862.8㎡ × 100 = 41.16%(법정 300%)			

2. 판매시설(2획지)

대지면적	지 번	지 목	분할예정 면적(㎡)	비 고
	379-1 (2획지)	대	33,228.8	
	합 계	33,228.8		
건축면적	8,771.57㎡			
연 면 적	16,581.31㎡			
용적률산정 연면적	15,620.41㎡			
건 폐 율	8,771.57㎡ / 33,228.8㎡ × 100 = 26.40%(법정 50%)			
용 적 률	15,620.41㎡ / 33,228.8㎡ × 100 = 47.01%(법정 300%)			

[건축배치계획도 – 획지 분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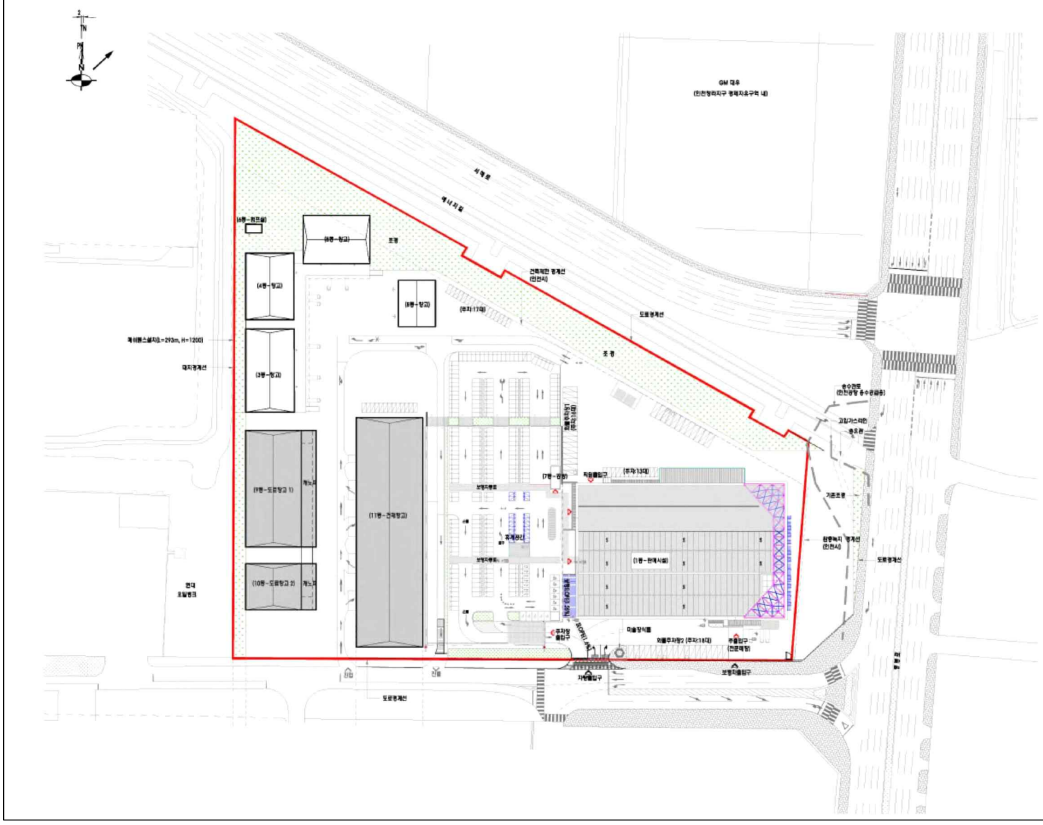

[건축배치계획도 – 획지 분할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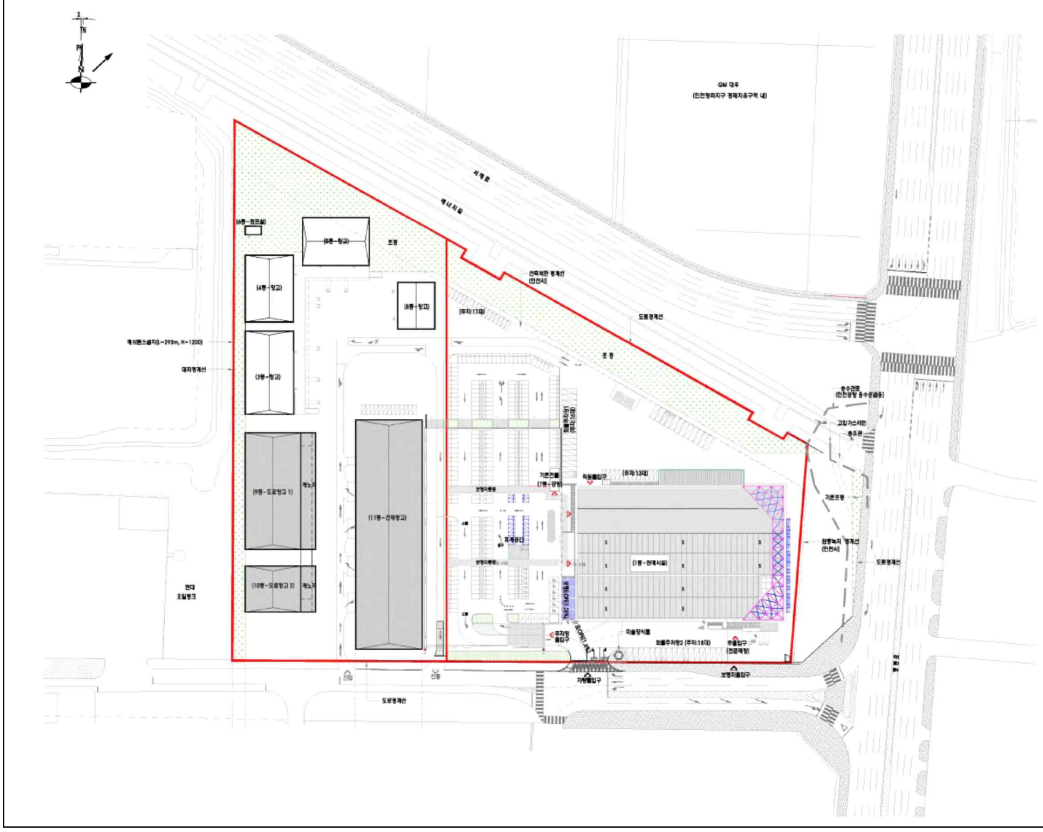

의 견 서

일 시	2019. . .
성 명	
주 소	※ 회신가능한 주소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연 락 처	※ 회신가능한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도시계획 변경사항	획지분할 (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Ⅰ8-1)
의 견 사 항	
※ 의견사항에 대한 사유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9 - 1530호

인천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9.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있음)

가. 공업용지(Ⅰ5)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기 정					변 경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Ⅰ5	27,133.1	1	6,777.7		Ⅰ5	27,133.1	1-1	3,388.85	
							1-2	3,388.85	
		2	6,798.1				2-1	3,399.05	
							2-2	3,399.05	
		3	6,770.3				3	6,770.3	
							4-1	3,393.5	
		4	6,787.0				4-2	3,393.5	

나. 공업용지(Ⅰ5)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Ⅰ5	1,2,4→ 1-1,1-2,2-1,2-2 ,4-1,4-2	획지분할	효율적인 토지이용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있음)

가. 차량진출입불허구간 변경(도면참조)

Ⅱ.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1.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의견제출: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도면: 게재 생략, 열람 장소에 비치

4.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3)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 민 제 안 서

2019. 09.

제안인 : ㈜태신글로벌

도시관리계획(북항 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 제안서

제안자	성 명	㈜ 태신글로벌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원석로 173 주식회사 태신글로벌			
제안사업의 개요	제안의 범위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업의 명칭	원창동 381-35, 381-36, 381-38번지 (북항배후부지 공업용지 Ⅰ-5-1, Ⅰ-5-2, Ⅰ-5-4) 획지분할			
	사업의 목적	기존 획지의 분할(3개 획지 → 6개 획지)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35, 381-36, 381-38번지 (북항배후부지 공업용지 Ⅰ-5-1, Ⅰ-5-2, Ⅰ-5-4)			
	면 적	20,362.8㎡			
	시 행 방 법	기존 획지 분할			
	토 지 현 황	구 분	공부상면적(㎡)	사용면적(㎡)	비 고
		원창동 381-35	6,777.7	6,777.7	
		원창동 381-36	6,798.1	6,798.1	
		원창동 381-38	6,787.0	6,787.0	
		합 계	20,362.8	20,36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입안을 제안합니다.

2019년 09월 06 일

제 안 인 : ㈜태신글로벌 (인)

<첨부>

1. 주민제안 개요
2.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도서
3. 기초자료조사서
4. 환경성 검토
5. 교통성검토
6. 인천도시관리계획 (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결정도
7. 건축계획
8. 토지이용에 관한 동의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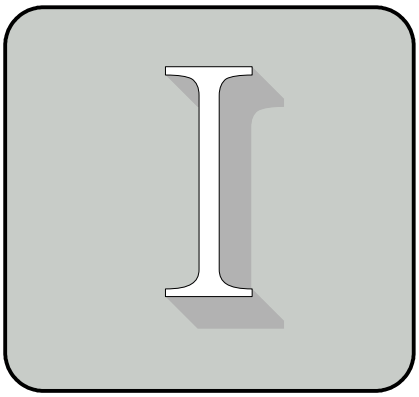

Ⅰ 주민제안 개요

1 주민제안 배경 및 목적

1 주민제안 배경 및 목적

- 원창동 381-35, 381-36, 381-38번지(가구Ⅰ-5 1,2,4획지)는 현재 태신글로벌 창고시설을 운영중임
- 대상지의 획지 규모를 축소하고, 각각 첨단 도시형공장,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6개동을 신축할 계획으로 획지계획변경(획지분할)을 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하고자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제안하고자 함

■ 토지편입현황

연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자 주소	비고
1	원창동	381-35	잡종지	6,777.7	6,777.7	㈜태신글로벌	인천광역시 서구 원석로 173 주식회사 태신글로벌	
2		381-36	창고용지	6,798.1	6,798.1			
3		381-38	창고용지	6,787.0	6,787.0			
계				20,362.8	20,3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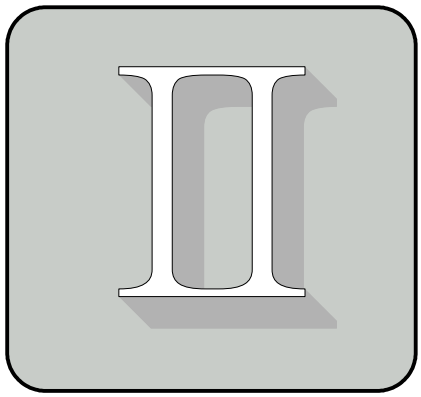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기정) 조서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	북항 배후부지	서구 석남동, 원창동 일원	2,092,933.2	

나. 북항 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 고	변 경 사 유
	Ⅰ	Ⅰ-5	27,133.1	기존 4개 획지 → 7개 획지로 분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획지 분할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가. 용도지역

○ 변경없음 : 도시계획결정(변경)조서 중 용도지역결정(변경) 내용과 동일

나. 용도지구 : 해당사항 없음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도시계획결정(변경)조서 중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내용과 동일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1) 공업용지(변경)

기 정						변 경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위치	면 적(㎡)	
Ⅰ	Ⅰ-5	27,133.1	1	6,777.7		Ⅰ	Ⅰ-5	27,133.1	1	3,388.85	Ⅰ-5-1 분할
			2	6,798.1					2	3,388.85	
			3	6,770.3					3	6,770.30	변경없음
			4	6,787.0					4	3,399.05	Ⅰ-5-2 분할
									5	3,399.05	
									6	3,393.50	Ⅰ-5-4 분할
									7	3,393.50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업용지(변경없음)

도면 표시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I	I-3, 4, 5	용 도	허 용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도시형 공장에 한함),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공동주택 중 기숙사
			불 허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건축한계선		○3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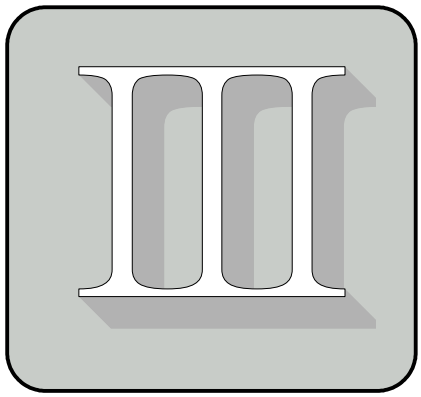

교통성 검토

1. 진출입 불허구간 변경

- 본 사업시행시 4개획지가 7개획지로 변경되었으며, 기정 1번획지의 변경 1,2번 획지로의 분할로 인하여 진출입불허구간을 변경

- 진출입 가능구간 연장 : 83m → 118m (▲ 35m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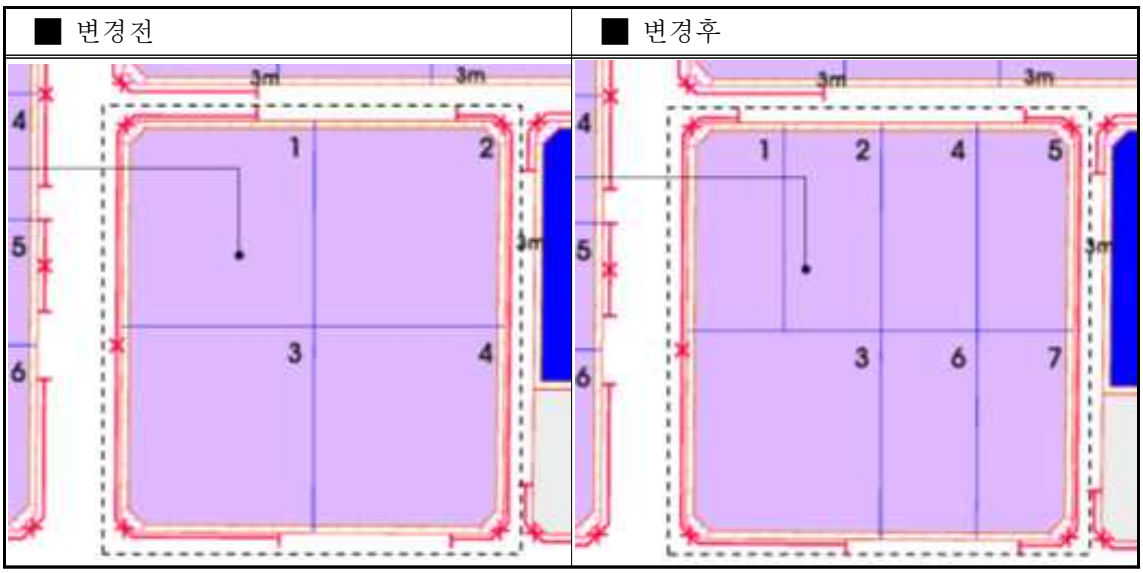

< 진출입 불허구간 변경도 >

2. 주변 교차로 서비스 수준 변화

- 사업시행 전·후 서비스수준 변화를 살펴보면 평균제어지체가 0.1~0.4sec/pcu 증가하였으나, 서비스 수준은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시행 전·후 신호교차로 서비스수준 변화(2020년)>

교 차 로 명	미시행시(①)		시행시(②)		서비스 수준 변화	지체도 변화 (②-①)
	평균제어지체 (sec/pcu)	LOS	평균제어지체 (sec/pcu)	LOS		
① 화물공영차고지 앞 사거리	34.0	C	34.3	C	C → C	▲ 0.3
② 현대블루핸즈 앞 사거리	30.5	C	30.9	C	C → C	▲ 0.4
③ 한국전통디자인 앞 사거리	26.2	B	26.3	B	B → B	▲ 0.1

3. 개선방안 및 개선효과

- 사업지 주변 교차로의 사업시행시 발생교통량의 부하로 인한 교통지체를 감소하기 위하여 최적신호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 그 결과, 장래 2020년에 평균제어지체가 0.3~4.2sec/pcu로 감소하여 개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차로 신호 최적화>

교차로명 \ 구분		현시 방법 및 시간(초) 1현시	2현시	3현시	4현시	5현시	주기(초)
① 화물공영차고지 앞 사거리	화물공영차고지 / 신세계산업 / 홈씨씨인테리어 / 현대블루핸즈				-	-	150
		39(3)	33(3)	69(3)	-	-	
② 현대블루핸즈 앞 사거리	화물공영차고지 / 한국전통디자인 / 모다아울렛 / 이천북항부두운영				-	-	150
		16(3)	88(3)	37(3)	-	-	
③ 한국전통디자인 앞 사거리	신세계산업 / 한국목재 / 현대블루핸즈 / 중일상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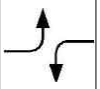			-	90
		29(3)	12(3)	25(3)	12(3)	-	

<신호 최적화시 서비스수준 변화>

교차로명	평균제어지체(초/대) 시행시	최적화시	증감	서비스수준 변화
① 화물공영차고지 앞 사거리	34.3	30.1	▼ 4.2	C → C
② 한국전통디자인 앞 사거리	30.9	30.6	▼ 0.3	C → C
③ 현대블루핸즈 앞 사거리	26.3	24.7	▼ 1.6	B → B

<종합개선방안>

구 분	지점	개 선 방 안
주변가로 및 교 차 로	-	◦ 『인천 북항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 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변경심의)(4차), 2017.09, ㈜한국종합기술』 개선안 반영
	-	◦ 사업지 인접교차로 최적신호운영방안 제시(3개소)
진 출 입 동 선	Ⓐ	◦ 사업지 획지분할에 따른 진출입구 불허구간 변경 - 사업지 북측도로(중로 2-3호선) 진출입 가능구간 83.0m → 118.0m로 35.0m 증가

주: 각 지점은 교통처리계획도 참조

4. 교통처리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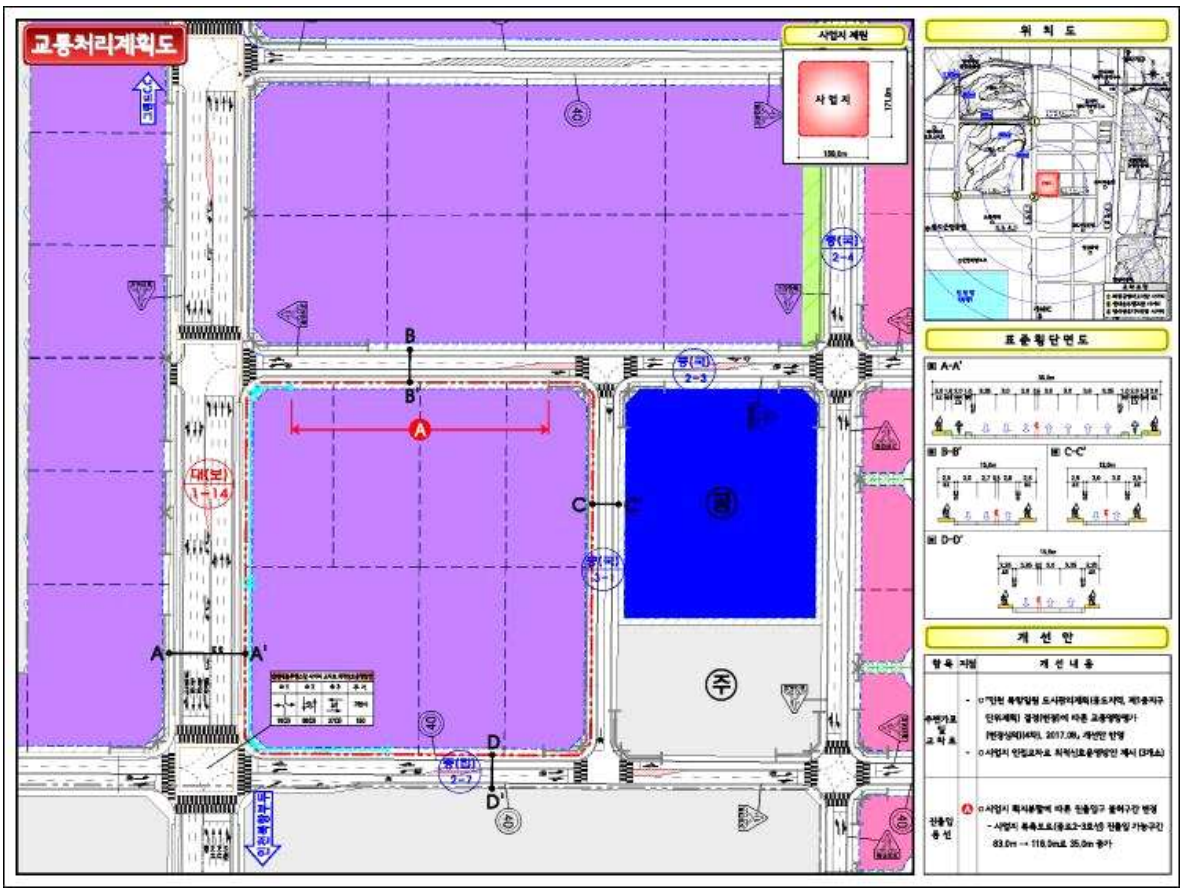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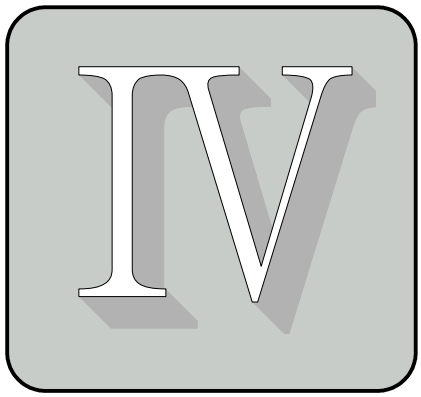

인천도시관리계획 (북항배후부지지구단위계획) 결정도

1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정)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기 정

2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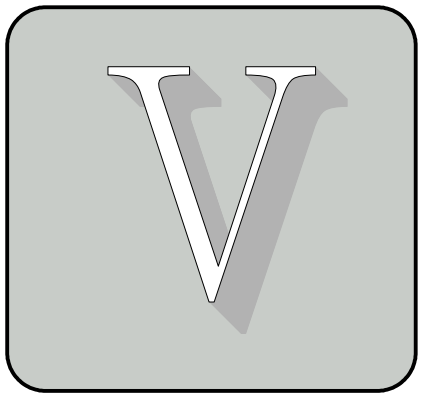

건축 계획

변경전 I-5-1 건축도면

1. 기정

■ 건축 개요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35번지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면적	6,777.70㎡	
건축면적	3,384.10㎡	
용적률산정연 면적	3,550.70㎡	
연 면 적	3,550.70㎡	
건 폐 율	3,384.10㎡ / 6,777.70㎡ x 100 = 49.93% (법정 : 50%)	
용 적 률	3,550.70㎡ / 6,777.70㎡ x 100 = 52.39% (법정 : 300%)	
조 경	1,090.12㎡(16.08%) (법정 : 15%)	
주차시설	법정	창고시설 : 3,550.70㎡ / 400㎡ = 8.88대
	설치	자주식 옥외 직각주차 9대 설치

■ 동별 면적표

동별	층별	용도	면적(㎡)	
1동	1층	창고시설(일반창고)	1,692.50	1,859.10
	2층	창고시설(사무실)	166.60	
2동	1층	창고시설(일반창고)	1,691.60	
계			3,55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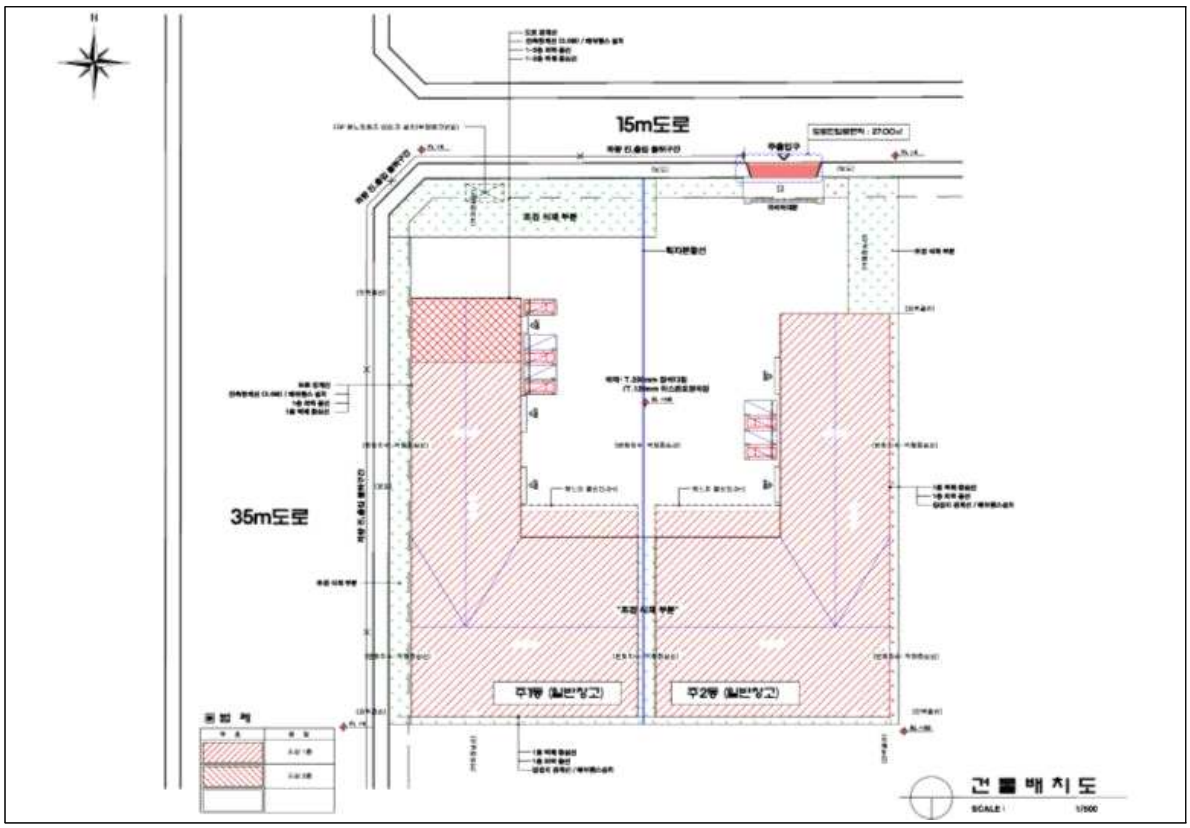

2. 변경 : I-5-1-1 획지

■ 건축 개요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35번지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면적	3,388.85㎡ (I -5-1-1)		
건축면적	1,692.50㎡		
용적률산정연 면적	1,859.10㎡		
연 면 적	1,859.10㎡		
건 폐 율	1,692.50㎡ / 3,388.85㎡ x 100 = 49.94%		(법정 : 50%)
용 적 률	1,859.10㎡ / 3,388.85㎡ x 100 = 54.86%		(법정 : 300%)
조 경	560.72㎡(16.55%)		(법정 : 10%)
주차시설	법정	창고시설 : 1,859.10㎡ / 400㎡ = 4.65대	
	설치	자주식 옥외 직각주차 5대 설치	

■ 동별 면적표

동별	층별	용도	면적(㎡)
1동	1층	창고시설(일반창고)	1,692.50
	2층	창고시설(사무실)	166.60
계			1,85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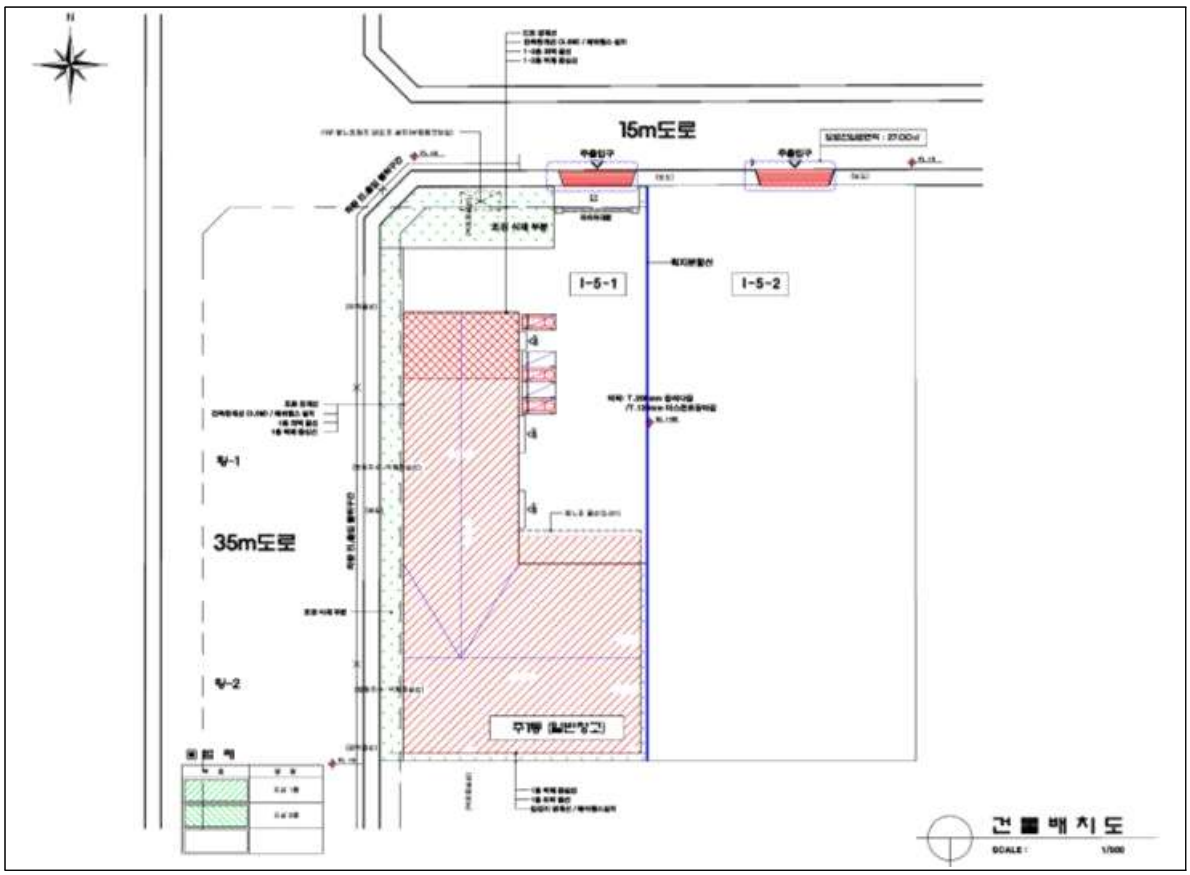

3. 변경 : Ⅰ-5-1-2 획지

■ 건축 개요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35번지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면적	3,388.85㎡ (Ⅰ-5-1-2)		
건축면적	1,691.60㎡		
용적률산정연 면적	1,691.60㎡		
연 면 적	1,691.60㎡		
건 폐 율	1,691.60㎡ / 3,388.85㎡ x 100 = 49.92%		(법정 : 50%)
용 적 률	1,691.60㎡ / 3,388.85㎡ x 100 = 49.92%		(법정 : 300%)
조 경	419.67㎡(12.38%)		(법정 : 10%)
주차시설	법정	창고시설 : 1,691.60㎡ / 400㎡ = 4.23대	
	설치	자주식 옥외 직각주차 5대 설치	

■ 동별 면적표

동별	층별	용도	면적(㎡)
1동	1층	창고시설(일반창고)	1,691.60
계			1,69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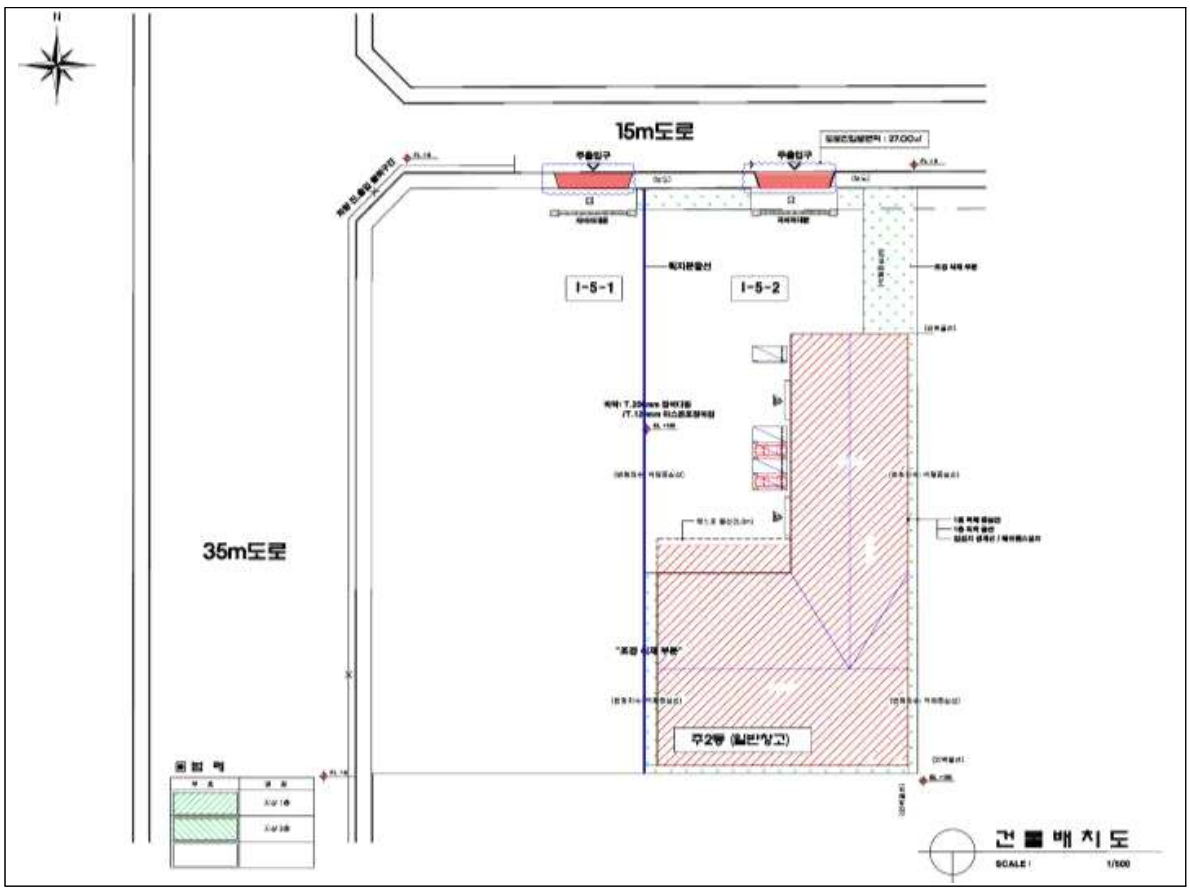

2 변경전 I-5-2 건축도면

1. 기정

■ 건축 개요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36번지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면적	6,798.10㎡	
건축면적	3,384.10㎡	
용적률산정연 면적	3,550.70㎡	
연 면 적	3,550.70㎡	
건 폐 율	3,384.10㎡ / 6,798.10㎡ x 100 = 49.78% (법정 : 50%)	
용 적 률	3,550.70㎡ / 6,798.10㎡ x 100 = 52.23% (법정 : 300%)	
조 경	1,050.05㎡(15.45%) (법정 : 15%)	
주차시설	법정	창고시설 : 3,550.70㎡ / 400㎡ = 8.88대
	설치	자주식 옥외 직각주차 9대 설치

■ 동별 면적표

동별	층별	용도	면적(㎡)	
1동	1층	창고시설(일반창고)	1,692.50	1,859.10
	2층	창고시설(사무실)	166.60	
2동	1층	창고시설(일반창고)	1,691.60	
계			3,55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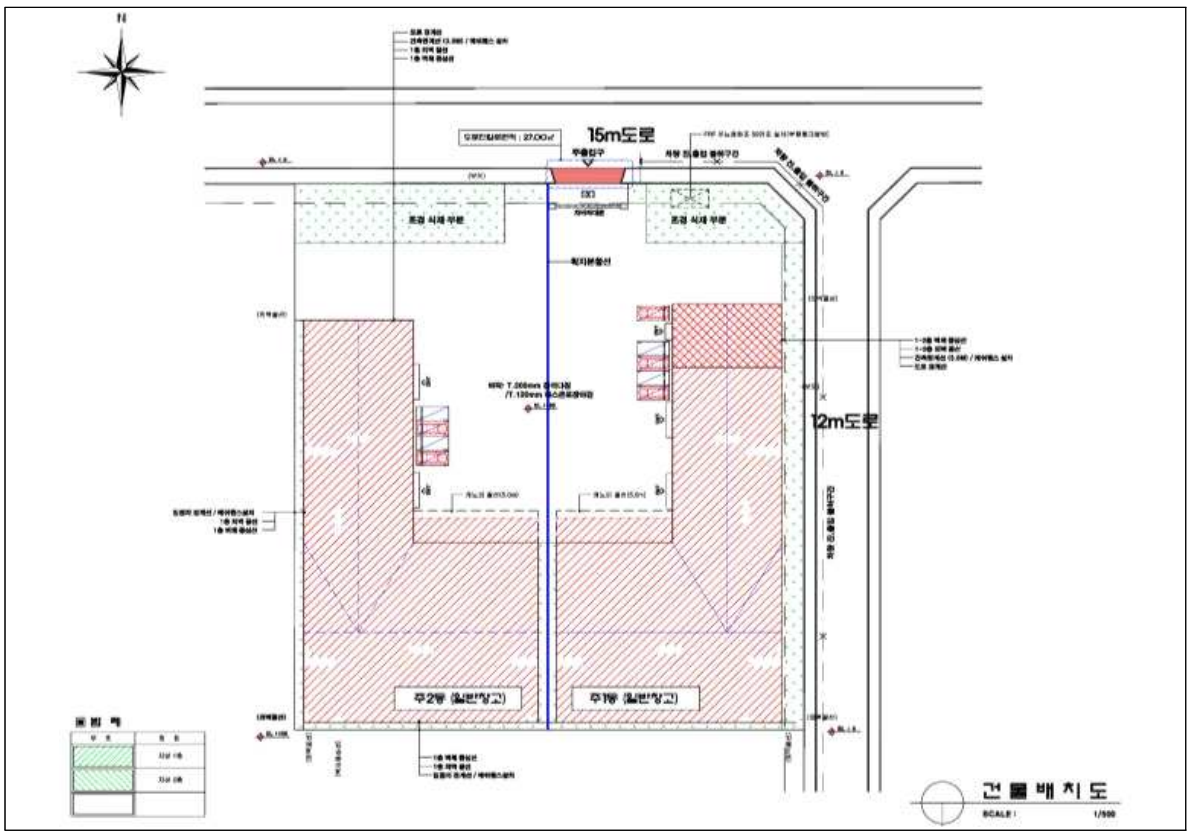

2. 변경 : I -5-2-1 획지

■ 건축 개요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35번지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면적	3,399.05㎡ (I -5-2-1)		
건축면적	1,691.60㎡		
용적률산정연 면적	1,691.60㎡		
연 면 적	1,691.60㎡		
건 폐 율	1,691.60㎡ / 3,399.05㎡ x 100 = 49.76%		(법정 : 50%)
용 적 률	1,691.60㎡ / 3,399.05㎡ x 100 = 49.76%		(법정 : 300%)
조 경	389.83㎡(11.47%)		(법정 : 10%)
주차시설	법정	창고시설 : 1,691.60㎡ / 400㎡ = 4.65대	
	설치	자주식 옥외 직각주차 5대 설치	

■ 동별 면적표

동별	층별	용도	면적(㎡)
1동	1층	창고시설(일반창고)	1,691.60
계			1,69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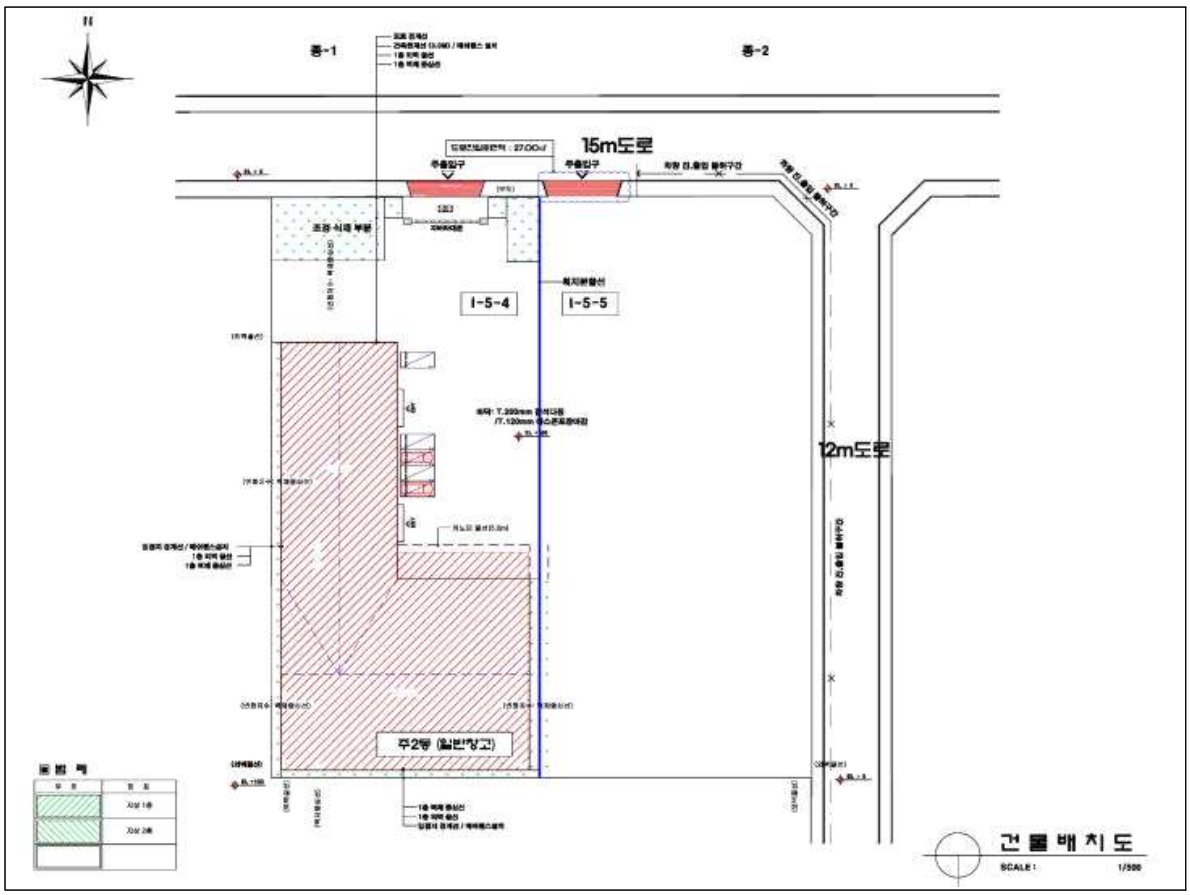

3. 변경 : I -5-2-2 획지

■ 건축 개요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35번지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면적	3,399.05㎡ (I -5-2-2)	
건축면적	1,692.50㎡	
용적률산정연 면적	1,859.10㎡	
연 면 적	1,859.10㎡	
건 폐 율	1,692.50㎡ / 3,399.05㎡ x 100 = 49.79%	(법정 : 50%)
용 적 률	1,859.10㎡ / 3,399.05㎡ x 100 = 54.69%	(법정 : 300%)
조 경	546.32㎡(16.07%)	(법정 : 10%)
주차시설	법정	창고시설 : 1,859.10㎡ / 400㎡ = 4.65대
	설치	자주식 옥외 직각주차 5대 설치

■ 동별 면적표

동별	층별	용도	면적(㎡)
1동	1층	창고시설(일반창고)	1,692.50
	2층	창고시설(사무실)	166.60
계			1,85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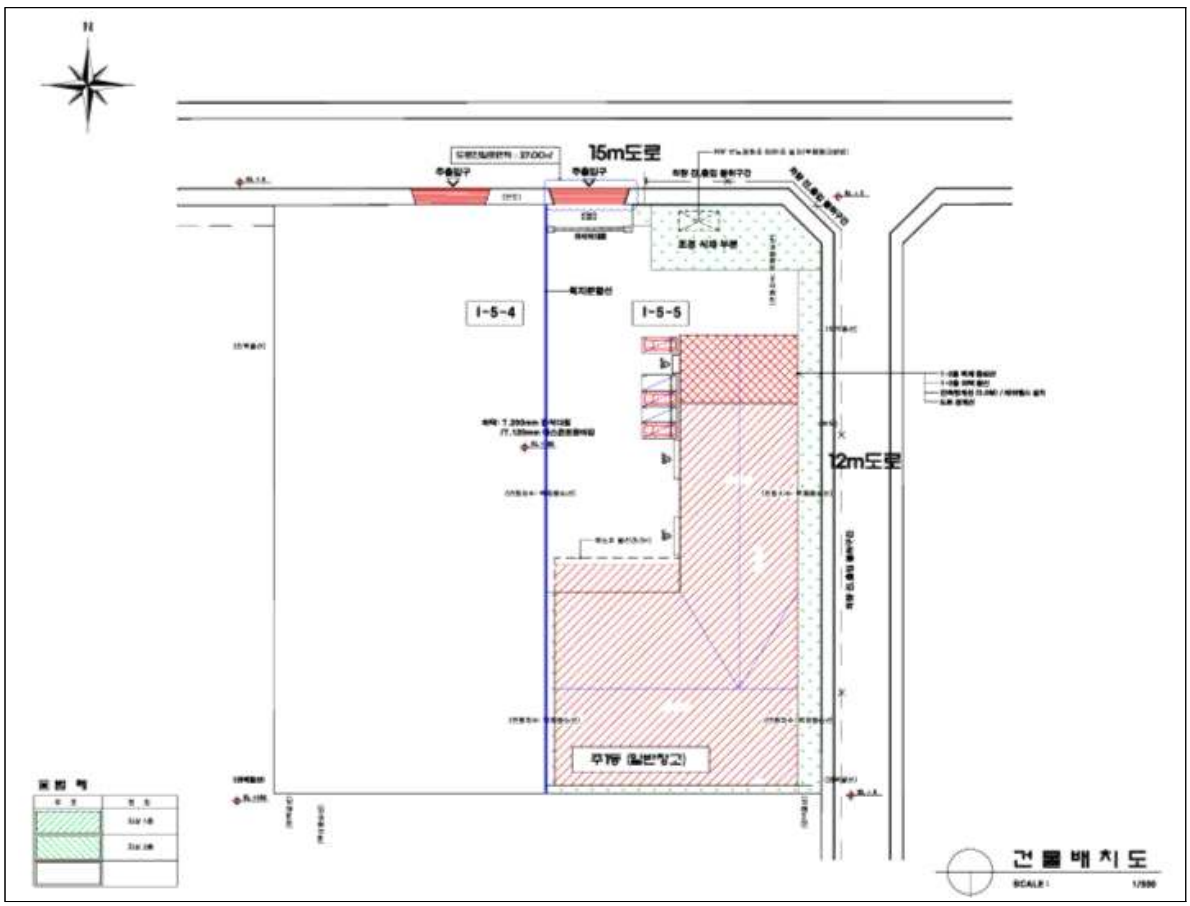

3 변경전 I-5-4 건축도면

1. 기정

■ 건축 개요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38번지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면적	6,787.0㎡	
건축면적	3,384.10㎡	
용적률산정연 면적	3,550.70㎡	
연 면 적	3,550.70㎡	
건 폐 율	3,384.10㎡ / 6,787.70㎡ x 100 = 49.86% (법정 : 50%)	
용 적 률	3,550.70㎡ / 6,787.70㎡ x 100 = 52.32% (법정 : 300%)	
조 경	1,048.58㎡(15.45%) (법정 : 15%)	
주차시설	법정	창고시설 : 3,550.70㎡ / 400㎡ = 8.88대
	설치	자주식 옥외 직각주차 9대 설치

■ 동별 면적표

동별	층별	용도	면적(㎡)	
1동	1층	창고시설(일반창고)	1,692.50	1,859.10
	2층	창고시설(사무실)	166.60	
2동	1층	창고시설(일반창고)	1,691.60	
계			3,55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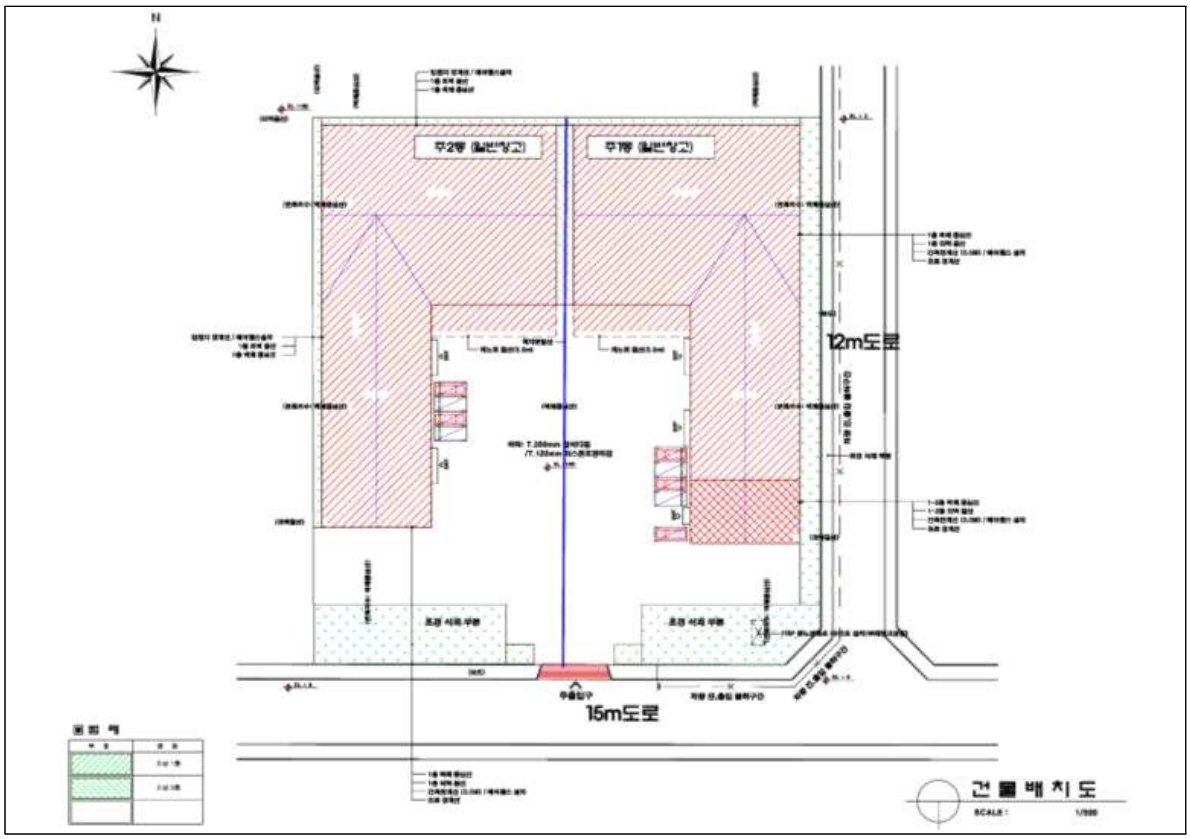

2. 변경 : Ⅰ-5-4-1 획지

■ 건축 개요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35번지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면적	3,393.50㎡ (Ⅰ-5-4-1)	
건축면적	1,691.60㎡	
용적률산정연 면적	1,691.60㎡	
연 면 적	1,691.60㎡	
건 폐 율	1,691.60㎡ / 3,393.50㎡ x 100 = 49.85%	(법정 : 50%)
용 적 률	1,691.60㎡ / 3,393.50㎡ x 100 = 49.85%	(법정 : 300%)
조 경	384.99㎡(11.34%)	(법정 : 10%)
주차시설	법정	창고시설 : 1,691.60㎡ / 400㎡ = 4.23대
	설치	자주식 옥외 직각주차 5대 설치

■ 동별 면적표

동별	층별	용도	면적(㎡)
1동	1층	창고시설(일반창고)	1,691.60
계			1,85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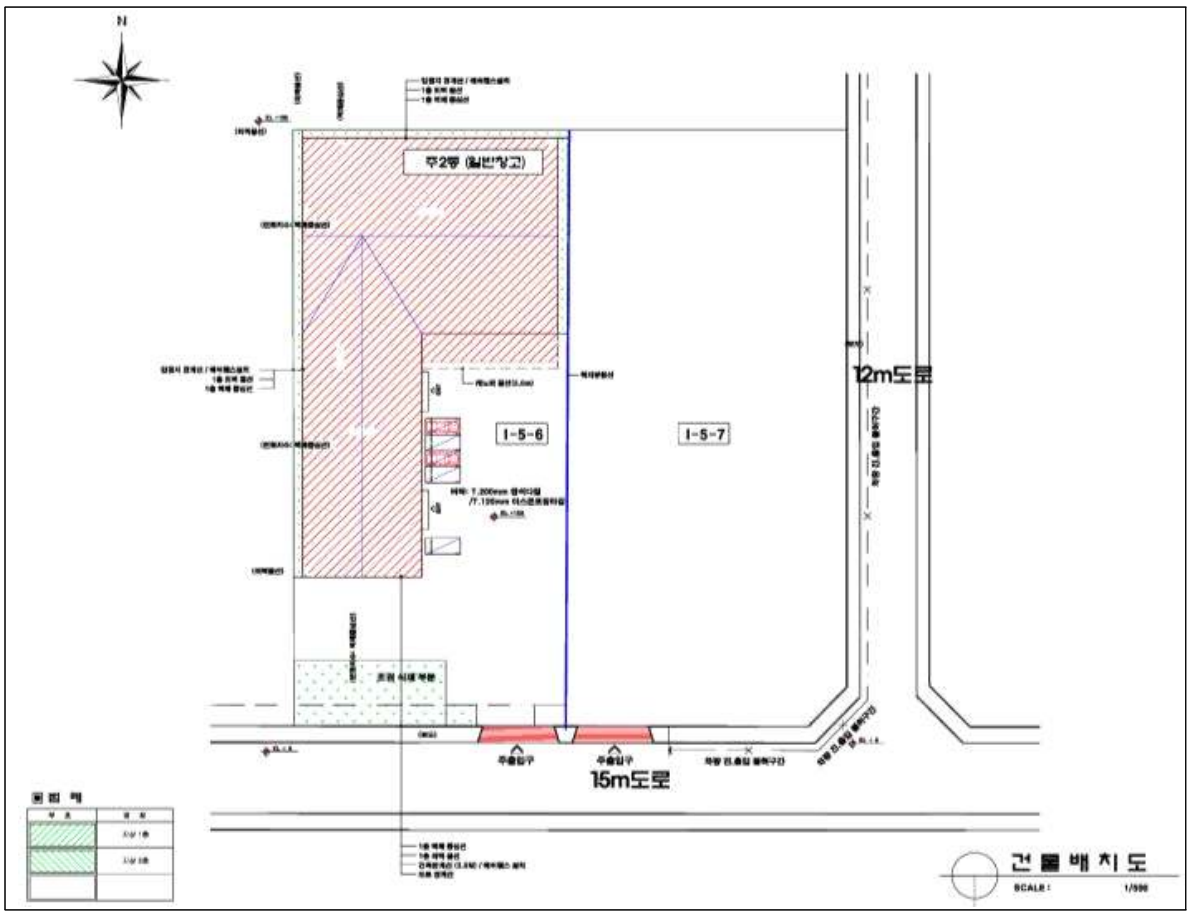

3. 변경 : I -5-4-2 획지

■ 건축 개요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35번지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면적	3,393.50㎡ (I -5-4-2)	
건축면적	1,692.50㎡	
용적률산정연 면적	1,859.10㎡	
연 면 적	1,859.10㎡	
건 폐 율	1,692.50㎡ / 3,393.50㎡ x 100 = 49.87%	(법정 : 50%)
용 적 률	1,859.10㎡ / 3,393.50㎡ x 100 = 54.78%	(법정 : 300%)
조 경	535.31㎡(15.77%)	(법정 : 10%)
주차시설	법정	창고시설 : 1,859.10㎡ / 400㎡ = 4.65대
	설치	자주식 옥외 직각주차 5대 설치

■ 동별 면적표

동별	층별	용도	면적(㎡)
1동	1층	창고시설(일반창고)	1,692.50
	2층	창고시설(사무실)	166.60
계			1,85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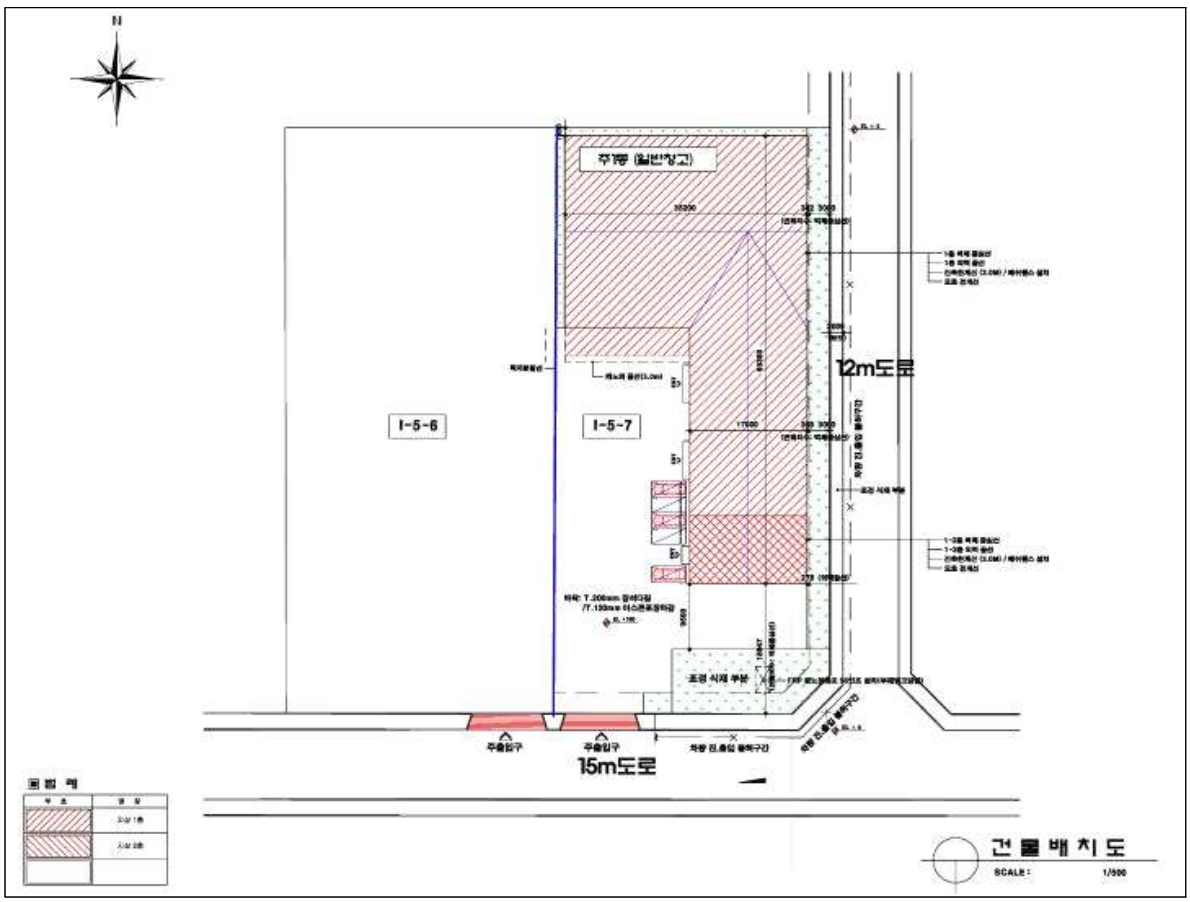

의 견 서

일 시	2019. . .
성 명	
주 소	※ 회신가능한 주소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연 락 처	※ 회신가능한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도시계획 변경사항	획지분할 (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Ⅰ5-1,2,4)
의 견 사 항	
※ 의견사항에 대한 사유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9-1533호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공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9. 9.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입안(안) 주요내용

가. 시설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 1-503호선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11-1 일원

○ 내용: 도로(중로1-503호선) 결정(변경)

· 규모: (당초) L=614, B=20m → (변경) L=673m, 폭원: 20m(20~24)

나. 입안내용

○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503	20	집산도로	614	대 2-61	남측지구계	일반도로	-	국고15-760(15.10.27)	-
변경	중로	1	503	20(20~24)	집산도로	673(지구내:614, 지구외:59)	대 2-61	대 3-104	일반도로	-	국고15-760(15.10.27)	-

○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중로 1-503	중로 1-503	◯도로 변경 -폭원:20m→20m(20~24m) -연장:614m→673m(증59m)	• 인천검단지구 내 중로1-503호선과 지구 외 대로3-104호선을 연결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함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가.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의견제출: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서면 제출

3.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개발과, 032-560-4762).

4.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편입 토지조서

□ 시설명 : 중로1-503호선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읍면 리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6,872	1,377					
1	서구 백석동	11-1	전	1,064	761	박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			
2	서구 백석동	11-2	전	661	422	김형*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1085-2 은행마을 태평아파트 ***-****	계양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101-4 (병방지점)	근저당권
3	서구 백석동	10	전	684	42	허*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 53, ***-****			
4	서구 백석동	12	전	1,339	75	광산김씨 **공파 종친회	인천광역시 서구 독정로 **-** (백석동)			
5	서구 백석동	13	도로	2,456	1	인천 광역시				
6	서구 백석동	226-10	도로	668	76	국				

의 견 서

일 시	2019. . .
성 명	
주 소	※ 회신가능한 주소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연 락 처	※ 회신가능한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도시계획 변경사항	도시계획시설(도로: 중1-503호선) 결정(변경)
의 견 사 항	
※ 의견사항에 대한 사유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도 시 관 리 계 획 [도 시 계 획 시 설 : 도 로] 결 정 입 안 [안]

관 계 기 관 [부 서] 사 전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2019. 9.

도 시 개 발 과

박성진/서구|미래도시국|도시개발과/2019-09-19 11:12:29

관계기관(부서) 사전협의 의견 조치계획

관 계 기 관 (부 서)	협 의 의 견(2019. 7. 31.)	조 치 계 획	비 고 (반영여부)
인 천 광 역 시 도 로 과	【관련문서 : 시 도로과-8297, 2019. 7. 31.】 ○ 협의의견 - 신설되는 중1류 남측도로(예비군 훈련장 진입도로)에 대하여, 현재 서구 도시기반과에서 도로확장 사업추진[서구 도시기반과-636(2019. 7. 29.)] 중임 - 남측 도로 확장으로 인하여 교차로 간섭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하여 관련부서(서구 도시기반과 등) 협의하여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연계 검토.	○ 추진중인 남측인근 소로개설사업(예비군 훈련장 진입도로)과 교차로간섭 등에 대하여 협의 후 사업추진	반영
인 천 광 역 시 시 설 계 획 과	【관련문서 : 시설계획과-5933, 2019. 7. 26.】 ○ 협의의견 - 대로3-104호선과 중로 1-503호선 연결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도로(중1류)를 신설하고자하나 선형시설인 도로의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중로1-503호선을 연장하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1-503호선)] 결정(변경)함이 타당하다 판단됨. - 도로의 폭원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4-2-2-1.에 따라 도로의 상단폭을 결정하여야 함.	○ 중로1-503호선을 연장하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1-503호선)] 결정(변경)으로 추진하고 상단폭에 맞춰 도로폭원 결정	반영

박성진/서구|미래도시국|도시개발과/2019-09-19 11:12:29

관계기관(부서) 사전협의 의견 조치계획

관 계 기 관 (부 서)	협 의 의 견(2019. 7. 31.)	조 치 계 획	비 고 (반영여부)
인 천 광 역 시 도시개발계획과 (추 가)	【관련문서 : 도시개발계획과-7061, 2019. 8. 13.】 ○ 협의의견 - 5지 교차로 안전성 확보 및 도로기하구조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필요 · 대로 3류(왕복5차로)와 중로 1류(왕복3차로)의 연결에 따른 차로수 균형 · 농지 진출입로 회전반영 확보 및 5지 교차로 교통안전 확보 등 · 신설교차로의 법적기준을 토대로 신호운영 적정성 판단 및 최적 신호운영 방안 제시 필요	○ 추진중인 남측인근 소로개설사업(예비군 훈련장 진입도로)과 교차로간섭 등에 대하여 협의 후 사업추진 - 대로 3류(본선기준 왕복4차로) 및 중로 1류(본선기준 왕복3차로)의 4지교차로 연결에 따른 교통량 분석 검토결과에 차로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였으며, 필요시 도로운영부서와 변경협의	반영

박성진/서구|미래도시국|도시개발과/2019-09-19 11:12:29

○ 관계기관(부서) 협의내용(도로: 중1-503 결정(변경) 입안(안))

협의기관	부 서	협 의 내 용	비 고
인천광역시	도시균형계획과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결정에 대한 관련법 저촉 여부 등	
	도시개발계획과	○검단신도시 사업 지구 내 도로(중1-503호선) 접속 관련 검토 의견 등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입안(안) 관련 사항 ○대3-104호선 접속 관련 검토 의견 등	
	도로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입안(안) 관련 사항 ○대3-104호선 접속 관련 검토 의견 등	
	종합건설본부	○대3-104호선 접속 관련 검토 의견 등	
서구	환경관리과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 등에 관한 사항	
	생태하천과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	
	안전총괄과	○재해영향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경제에너지과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교통정책과	○교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도시기반과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과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결정에 대한 관련법 저촉 여부 등	
	도시재생경관과	○경관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기타부서	○기타 소관사항에 관한 사항	

인천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

-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외 도로 조성사업 -

2019. 9.

Ⅰ 개 요

1. 대상지 개요

ㅇ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11-1번지 일원

ㅇ 도로 제원 : B=20m, L=59m, A=1,377㎡

▮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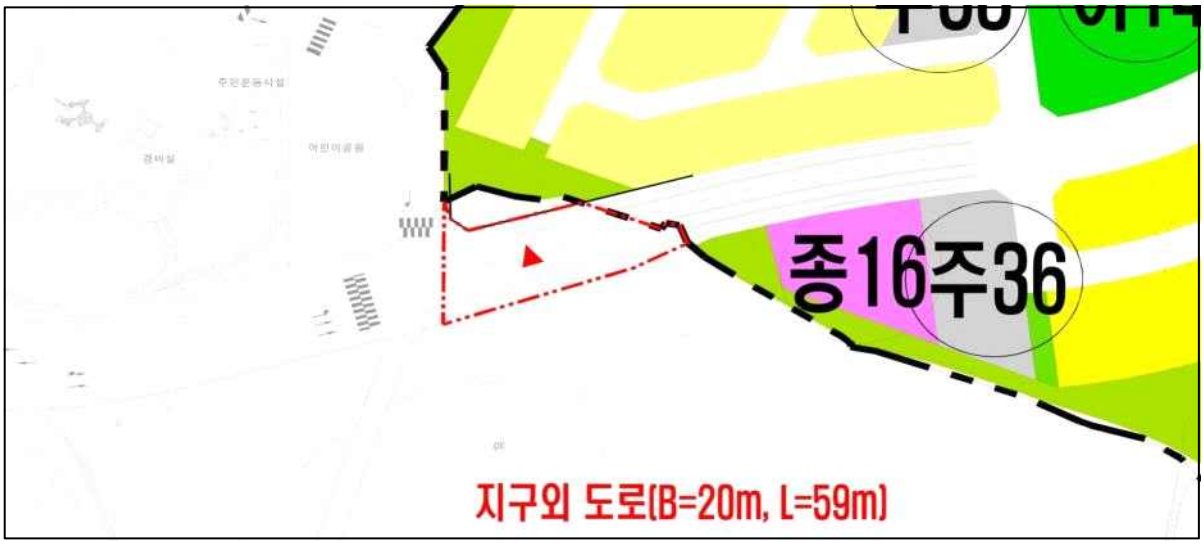

▮ 도시관리계획도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Ⅱ 도시관리계획(안)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도로 결정(변경)조서(안)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503	20	집산도로	614	대 2-61	남측지구계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변경	중로	1	503	20 (20~24)	집산도로	673 (지구내:614, 지구외:59)	대 2-61	대 3-104	일반도로		국고15-760 (15.10.27)	

▌ 도로 결정(변경)도(안)

기 정	변 경(안)

2. 사업시행자

ㅇ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3. 용지도

[지목별 현황도] [소유자별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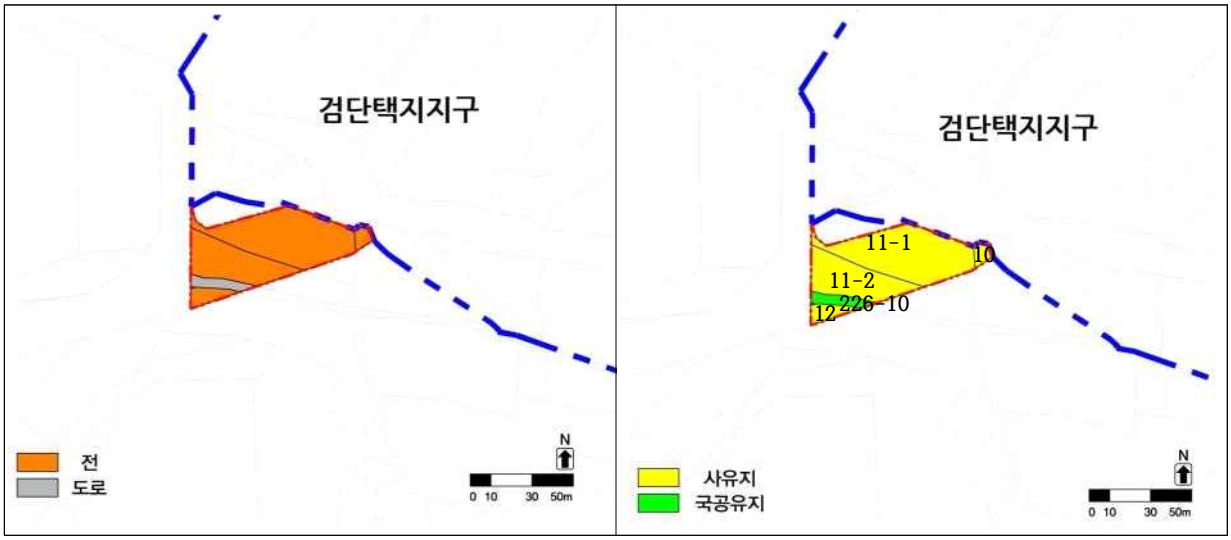

4. 교통처리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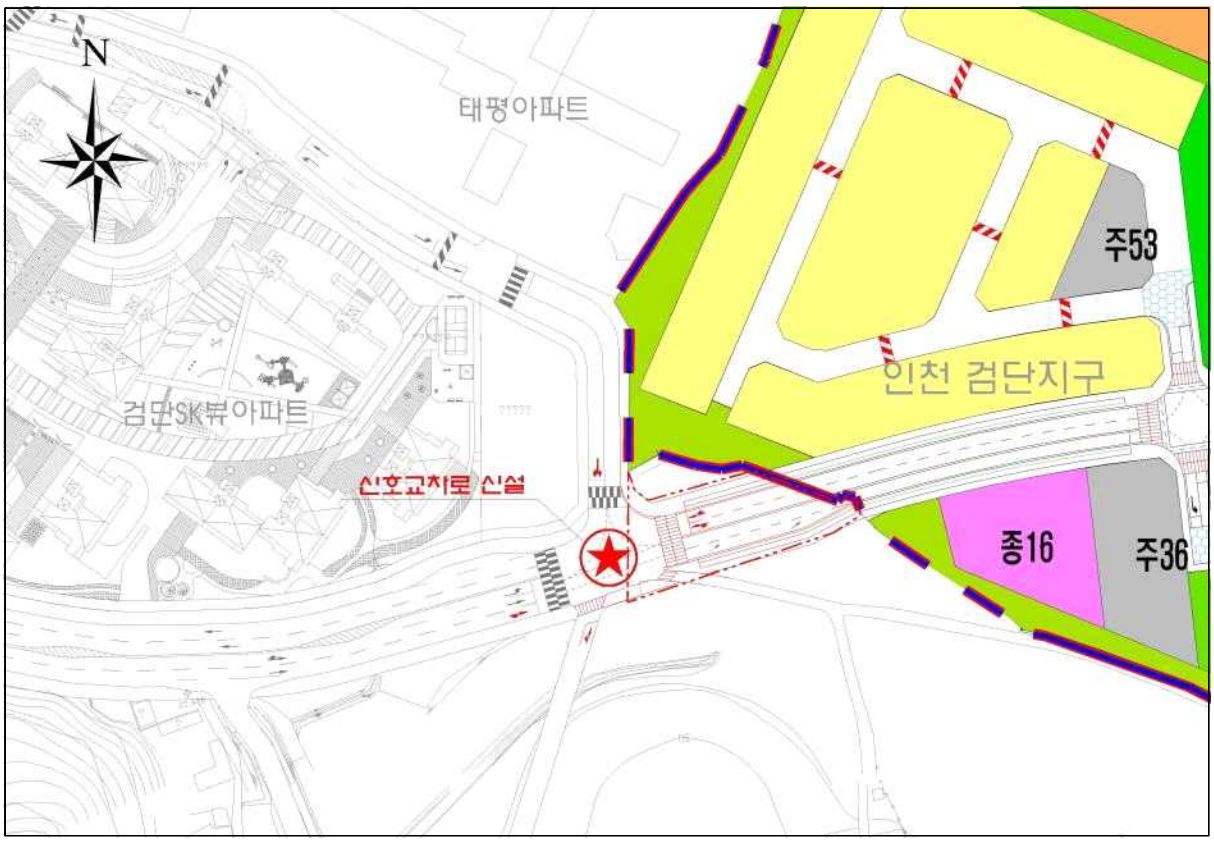

5. 편입 토지조서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소재지	지번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주 소	성명	
1	서구 백석동	11-1	전	1,064	76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91	박영식	
2	서구 백석동	11-2	전	661	422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1085-2 은행마을 태평아파트 416-1903	김형래	
3	서구 백석동	10	전	684	42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 53, 107-1302	허민	
4	서구 백석동	12	전	1,339	75	인천광역시 서구 독정로 16-32(백석동)	광산김씨판관공파종친회	
5	서구 백석동	13	도로	2,456	1		인천광역시	
6	서구 백석동	226-10	도로	668	76		국	
합 계				6,872	1,377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1541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9.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당하동 분동 추진에 따라 마전동을 신설하고, 관할구역 경계를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체발굴 정비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규정에 어긋

난 표기를 올바르게 고쳐 신뢰성을 높이고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함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788, 팩스 032-560-27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체발굴 정비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규정에 어긋난 표기를 올바르게 고쳐 신뢰성을 높이고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목적) 약칭 사용 삭제 및 제3조(보험의 가입) 약칭 기재

나. 법령명에 큰따옴표(“ ”) 대신 낫표(「 」) 기재(제1조)

다. 정확한 의미를 나타내는 표기로 변경(제2조, 제4~6조)

라. 올바른 띄어쓰기 사용(제명, 제1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개　정　안 : “별지 참조”

2)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3)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로,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을 “보험·공제등”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담당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관련업무”를 “관련 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인감관련업무”를 “인감 관련 업무”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을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보험”을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직위당”을 “1직위 당”으로 한다.

제4조 중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당해”를 “해당”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를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을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치하고”를 “갖춰 두고”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관계서류”를 “관계 서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 보험·공제 등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①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확정일자 부여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제2조(담당공무원) ①--.------------------- 그 밖에 ------------------------------ 관련 업무--.
②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②----------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 그 밖에 --------------------- 인감 관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련 업무----------.
제3조(보험의 가입) ①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1직위당 100,000,000원 이상으로 한다.	②----------1직위 당 ----------.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해당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그 밖에 ----------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 해당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②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 해당 ----------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 ---------- ----- 그 밖에 ---------- ---------.
②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갖춰 두고 -------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관계 서류---------- ----------.

의 견 제 출 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9 -1543 호

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 및 폐기 공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9. 23.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등록 및 폐기 사유

○ 공인 명칭 각인 오류로 인한 폐기 및 정정 재등록

2. 공인의 최초 사용일 및 폐기일 : 2019년 9월 23일

3. 등록 및 폐기 공인 내역

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인영
인천광역시서구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인	공인 명칭 정정	2019.9.23.	
공인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인영
인천광역시서구주택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인	공인 명칭 오류	2019.9.23.	

등록 공인 목록

연번	공인명	종 류	규 격	등록사유	비 고
1	인천광역시서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의인	기관장인	2.4cm x 2.4cm	공인명칭 정정 재등록	

폐기 공인 목록

연번	공인명	종 류	규 격	폐기사유	비 고
1	인천광역시서구주택과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의인	기관장인	2.4cm x 2.4cm	공인명칭 오류 각인으로 폐기	